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가-4

국제 회계 기준 도입 등에 따른 통신 회계 제도 연구

A Study on the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due to Introduction of K-IFRS

2010.11.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가-4

국제 회 계 기 준 도 입 등 에 따 른 통 신 회 계 제 도 연 구

A Study on the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due to Introduction of K-IFRS

2010.11.30

연 구 기 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괄책임자 : 고창열(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 사 말 씀

오늘날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이 마련되었습니다. 회계란 기본적으로 한 기업이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 요약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정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및 성장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IFRS는 기업실적을 한 눈에 나타내주는 언어인 회계기준을 어느 국가에서나 동일하게 표시하고 읽을 수 있도록 통일하기 위해 만든 국제적 회계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IFRS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에는 모든 상장회사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통신회계제도는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간 각 대가 산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회계제도는 특별히 별도로 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상장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되고, 이는 곧 통신회계정보의 변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규제기관에게 적합한 회계정보인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과 통신회계기준의 정합성 검토를 통

한 차이조정방안 검토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규정 개정안의 도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덧붙여 규제목적에 적합한 투자보수를 산정방식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회계규정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신사업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통신회계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자료 및 아이디어의 활발한 공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한 지속적인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의 고창열 선임연구원이 총괄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상우 팀장, 강선아, 최선미 선임연구원, 정내양, 오경희 연구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로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경희대학교 강병민 교수, 한양대학교 박준호 교수, 동국대학교 양동훈 교수, 홍익대학교 정영기 교수, 선진회계법인 홍형기 이사, 삼덕회계법인 문상철 이사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과가 탄생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김미정 사무관, 박귀식 주무관 및 케이티, SK텔레콤, LGU+, SK브로드밴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C&M, 티브로드 등 통신사업자의 관계자 제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 11. 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 홍 남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1.

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책임자 : 고창열(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참여연구원 : 이상우(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팀장)

강선아(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최선미(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정내양(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연구원)

오경희(서비스기반정책연구팀, 연구원)

요 약 문

1. 제 목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가. 연구의 목적

- o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규정 개정(안) 도출
- o 투자보수율 산정 및 적용 개선방안 도출
- o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회계규정 개정(안) 도출
- o All-IP환경에 대비한 회계분리대상 역무체계의 검토

나. 중요성

- o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규정 개정 및 All-IP환경에 대비한 회계분리대상 역무체계의 검토 등 규제의 적시성 확보가 요구됨
-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은 단순한 회계변경이 아닌 회계인프라 전반에 걸친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통신회계규정의 개정이 필요

- 또한 All-IP환경에 대비한 회계분리대상 역무체계의 검토를 통해 적시
성 있는 규제체계 확보 필요
- o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회계규정 개정(안) 도출이 필요
- 합병으로 인해 대표투자보수율 산정 및 적용이 불가하므로 역무별 투
자보수율 및 경영효율성 유인을 위한 산정방식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
- 데이터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데이
터서비스의 회계분리방안을 포함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o 제 2 장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 o 제 3 장은 국제회계기준과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통신규제회계와 IFRS간 정합성을 검토한 후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
개정안을 도출
- o 제 4 장은 2010년 투자보수율 산정내역을 살펴본 후 규제목적에 적합
한 미래지향적 투자보수율 산정방안을 제시하고
- o 제 5 장은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해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방안
및 All-IP환경에 대비한 회계분리대상 역무체계를 검토
- o 제 6 장은 결론을 제시

4. 연구내용 및 결과

- 재무제표 명칭 변경(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사항 및 개별회사 중심의 공시체계가 연결회사 중심의 공시체계로 변화한 사항에 대한 통신회계기준 보완 필요
- 통신회계기준의 목적인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회계기준 규정 보완 필요(역사적 원가 기준을 유지, 안정적 규제원가 산출을 위해 영업권 상각)
- 원칙중심의 K-IFRS 적용에 따라 기업이 세부 회계처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간 회계정보 산출결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신회계기준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자간 비교가능성을 제고
- 회계처리방식에 따른 회계정보 산출결과 그 차이가 미미하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통신회계만을 위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면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인정
- IFRS를 적용하는 상장사의 경우 예측관련 사항 등에 기업의 재량권이 존재하여 신뢰성 및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해당 항목의 회계처리방법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 2010년 투자보수율은 합병사업자의 역무별 투자보수율의 적용을 위해 KT의 2008년 기준 투자보수율을 전송역무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역무의 투자보수율로, SKT의 2008년 기준 투자보수율을 주파수를 할

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투자보수율로 확정

- 주식시장에서는 유선사업자의 위험도를 이동사업자의 위험도보다 높게 평가 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이동서비스의 투자보수율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음
- 투자보수율은 통신사업자의 원가보상율, 상호접속원가, 보편적서비스 적자분담금 산정 등 통신경쟁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산정방식의 정립이 매우 중요
-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미래의 효율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투자보수율을 산정하기 위해 자본구성비율 또는 타인자본비용 산정방식 등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세부방식의 개선이 필요
- o 최근 데이터시장의 급격한 발전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음성서비스 원가는 요금원가 산정 및 접속료 산정에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규제정보가 되며, 규제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음성·데이터서비스에 대한 회계분리규정의 부재는 통신회계제도가 천명하는 상호보조의 금지를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서비스 원가왜곡으로 요금과 접속료 등을 통해 경쟁구조 및 사회적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통사업자의 수익 중 배부가 어려운 기본료, 가입비, 정액요금 등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정액요금제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는 추세에 있어 수익배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준설정을 통해 산출된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의 회계정보는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임

5. 정책적 활용내용

- o 방송통신 융합환경하에서의 전기통신사업의 정책수립과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합목적적인 기초자료로서의 사업자 회계정보 산출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정비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처리 절차 마련
-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 산출
-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보다 정교한 사후 규제 및 시의적절한 요금 규제체계 확립을 위한 회계정보 제공

6. 기대효과

- o IFRS를 반영한 통신회계제도 정비를 통한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불필요한 규제의 최소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 o 신규 서비스 및 사업분야에 대한 사업자의 진입시 소요되는 적정 투자비의 산출 및 관련 정책 결정과 통신망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위한 동기 제공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due to Introduction of K-IFR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IFRS introduced mandatory for listed companies is not a simple changes in accounting rules but the great changes of financial infra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reflected the needs of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Standards(GAAP), and IFRS. And it shows the implications of the harmonization between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IF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ful for firms and regulator. Adoption of the IFRS is expected not only to affect preparation and reporting of financial statements, but also to influence firms' operating activities in general such as operating process, information system, and personnel organization significantly.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is an overall review fo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counting system. Chapter 3 reviews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existing GAAP and IFRS accounting regulatory. After reviewing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IFRS it is derived the revised accounting standards. Chapter 4 proposes estimating methods of the forward looking rate of return. Chapter 5 presents accounting separation alternatives of voice and data and services categories of accounting separate for All-IP environment in order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Chapter 6 presents conclusions.

4. Research Results

Due to the introduction of IFRS Financial statements(balance sheet) should be renamed. And individual disclosure system changed to connecting disclosure system. Therefore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hould be revised.

The purpose of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a reasonable decis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amendments are necessary. These are maintaining historical cost basis and calculating goodwill amortization for a stable regulatory costs.

IFRS is principle-based standards. Therefore, firms can choose how to handle a detailed accounting method. Accordingly, comparison between operators is likely to decrease. To improve the comparability of the standards revision will be required. If calculated results based on different accounting methods is very small, the accounting treatment is required to reduce the burden of firms.

And to reflect the current economic value it is needed to estimate forward looking rate of return by future rates of capital structure and adoption of debt premium method.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reformation plan for the Account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ill be reviewed and used for amending current Principles.

The cost information by services calculated by revised Accounting Principles will be more useful for tariff charges, interconnection charge, universal service fund and etc.

6. Expectations

This research will provide a foundation which helps to build up a variety of useful cost information data for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y decisions and implementations through revising current Accounting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t will drive a fair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prevent consumers' welfare from being decreased by controlling non-fair competition factors. It will also contribute to calculate proper costs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ccess charges and universal service costs through rational accounting separation.

Moreover,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develop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because it drives fairer competition among operators through providing useful and proper accounting information.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목적	6
제 2 절 연구 범위	6
 제 2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9
제 1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	11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	11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관련 법체계	11
3.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와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	12
제 2 절 통신회계제도 연혁 및 주요내용	14
1. 현행 법체계	14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및 주요내용	14
제 3 절 '09년 12월 회계분리기준 개정 주요사항	18
1.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	18
2. 원가분류방법 및 배부기준의 합리적 개정	21
3. 합병 및 결합판매 증가 등 시장상황 반영	25
 제 3 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분리기준 개선방안	29
제 1 절 국제회계기준 개요	31
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31

2. 국제회계기준과 기존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분석	37
제 2 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개선 필요성	39
1.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규제회계정보 변경	39
2. 원칙중심의 IFRS 도입으로 인한 비교가능성 저하	41
3. 기업회계기준의 이중화로 사업자간 비교가능성 저하	41
제 3 절 국제회계기준과 통신회계기준 차이 조정방안	43
1. 통신규제회계와 국제회계기준 정합성 검토	43
2. 통신회계기준상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정립	46
3. 국제회계기준과 통신회계기준 차이조정 방안	51
제 4 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개정안	53
1. 기본적 개정사항	53
2. 원칙 1: 통신회계기준의 목적에 적합한 회계기준 설정	56
3. 원칙 2: 사업자간 비교가능성 제고	60
4. 원칙 3: 회계정보 산출자(사업자) 부담 최소화	61
 제 4 장 규제목적에 적합한 투자보수율 산정방안 연구	67
제 1 절 투자보수율의 개념 및 정책적 함의	69
1. 투자보수율의 개념	69
2. 투자보수율의 정책적 함의	69
3. 투자보수가 원가에 포함되는 이유	71
제 2 절 2010년 투자보수율 산정	72
1. 개요	72
2. 산정방식: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73
3. 과거 투자보수율 현황	74
4. 2010년 투자보수율	75
제 3 절 해외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82

1.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82
2. 투자보수율 수준	83
3. 목표자본구조 : 타인자본비율	84
4. 사례별 세부내용	85
제 4 절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91
1. 역무별 투자보수율 산정 방안	91
2.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92
제 5 절 소결론	96
 제 5 장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회계규정 개선방안	 99
제 1 절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현황 및 필요성	101
1. 회계분리의 의의 및 목적	101
2. 음성·데이터 서비스 회계분리 현황	102
3.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환경변화	106
4.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 필요성	111
제 2 절 음성·데이터 공통원가 배부기준 설정원칙	116
1. 회계분리의 절차와 회계분리 대상	116
2. 공통원가 배부 원칙	118
3. 공통원가의 세분류와 가격설정 원칙	121
제 3 절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방안	124
1.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에 대한 사업자 의견	124
2. 3G망 세분화를 통한 네트워크 원가분리	125
제 4 절 현행 법체계하 회계분리 역무체계 검토	130
1. 회계분리 대상역무관련 법조항	130
2. 현행 법체계하 회계분리 역무분류 체계 개정방향	132
제 5 절 All-IP환경에 대비한 회계분리대상 역무체계의 검토	133

1. All-IP망의 개념	133
2. All-IP환경에 대비한 회계분리대상 역무체계의 검토	135
제 6 장 결 론	137
 참 고 문 헌	 143
 부 록	 145
< 부록 1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신·구조문 대조표	147
< 부록 2 > 신·구 기업회계기준간 차이비교표	149

표 목 차

< 표 2-1 > 전기통신사업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13
< 표 2-2 >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의 변천	16
< 표 3-1 >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의 주요 차이점	38
< 표 3-2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의 변화	42
< 표 3-3 > 통신회계기준 개정방법	43
< 표 3-4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관련 변경사항	53
< 표 3-5 > 재무제표 명칭변경 관련 통신회계기준 개정(안)	55
< 표 3-6 > 공시체계의 변화관련 검토	55
< 표 3-7 > 공시체계 변화 관련 통신회계기준 개정안	56
< 표 3-8 > 유형자산 평가방법 변경관련 검토	57
< 표 3-9 > 유무형자산 재평가 관련 통신회계기준 개정안	57
< 표 3-10 > 영업권 등 상각방법 변경관련 검토	58
< 표 3-11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영업권 포함) 상각 관련 개정안 ...	59
< 표 3-12 > IFRS 도입이후 사업자별 단말기보조금 회계처리	60
< 표 3-13 > 고객충성제도 관련 회계처리	61
< 표 3-14 > 퇴직급여채무 측정 관련 검토	62
< 표 3-15 > 가입비 수익 인식 검토	63
< 표 3-16 > 복구충당부채 인식관련 검토	64
< 표 3-17 > 금융비용 자본화 관련 검토	65
< 표 4-1 > 자본비용의 현재가치 산정	72
< 표 4-2 >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연도별 투자보수율 (세후)	75
< 표 4-3 > 2010년 투자보수율과 2009년 투자보수율 비교	75

< 표 4-4 > 측정기간별 사업자별 시장위험계수 수준	77
< 표 4-5 > 2008년 KT와 SK텔레콤의 서비스 규모 비교(단위: 억원)	81
< 표 4-6 > 해외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비교	83
< 표 4-7 > 투자보수율 수준 비교	84
< 표 4-8 > 목표부채비율 수준 비교	85
< 표 4-9 > 영국 BT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86
< 표 4-10 > 영국 이동접속료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87
< 표 4-11 > 스웨덴 유선접속료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88
< 표 4-12 > 스웨덴 이동접속료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89
< 표 4-13 > 아일랜드 유선사업을 위한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90
< 표 4-14 > 장부가치 실제자본구조와 시장가치 실제자본구조 비교	94
< 표 4-15 > (시장가치) 실제 자본구조와 목표자본구조 비교	95
< 표 5-1 > 전세계 이동전화 가입자수	106
< 표 5-2 > IDC의 스마트폰 전망	108
< 표 5-3 > Gartner의 스마트폰 전망	109
< 표 5-4 > Cisco의 전세계 모바일 데이터트래픽 전망	109
< 표 5-5 > 음성데이터 분리를 위한 세부역무 관련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117
< 표 5-6 > 네트워크 원가의 음성데이터 분리 관련 사업자의견	124
< 표 5-7 > 3G 망세분화 및 음성데이터 전용/공용 구분	126

그 립 목 차

< 그림 2-1 >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현행 법체계	12
< 그림 3-1 > IFRS의 해외 도입현황	32
< 그림 3-2 > IFRS 포괄손익계산서 구성항목	54
< 그림 4-1 > 투자보수율의 개념	69
< 그림 4-2 > 투자보수율과 통신경쟁 정책과의 관계	70
< 그림 4-3 >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73
< 그림 4-4 > 자기자본비용 산정방식	74
< 그림 4-5 > 연도별 시장위험계수(일별수익률 기준)	79
< 그림 5-1 > CDMA2000-1X/EVDO 망 구성도	107
< 그림 5-2 > 3G 망 구성도	108
< 그림 5-3 > 주요 이통사의 데이터 수익 증가율	110
< 그림 5-4 > 유선전화망 구성도	122
< 그림 5-5 > RNC의 세부 블록 및 시스템	128
< 그림 5-6 > IP기반 네트워크 통합 개념도	134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가.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기준 개정 필요

- o 국제회계기준은 전 세계 단일화된 회계기준이며 한국도입 국제회계기준(K-IFRS)은 상장사기준으로 2011년부터 적용할 예정임
- 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하며 각국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제회계기준은 보수적 관점에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정보제공으로 회계의 기본접근방식이 변화함
- 이는 규율중심(Rule based)이 아닌 원칙중심(Principle based)으로의 기준전환을 의미하며,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의 재량권 확대가 예상됨
- o 현행 통신회계제도는 취득원가기준의 K-GAAP에 따른 기업회계자료를 기초로, 회계분리작업 및 검증을 수행하며 상호접속원가, 원가보상율,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투자보수율 등을 산정하고 있음
- o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자료의 작성기준 변화가 통신회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여 기준을 개정해야 함

나. 합병에 따른 대표투자보수율 산정 및 적용의 어려움

- 2009년 6월 KT-KTF 합병, 2009년 9월 SKT의 SK네트웍스 전용회선 사업부문 인수, 2010년 1월 LG계열 통신 3사의 합병 등 최근 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 사례는 기존의 대표투자보수율 산정 및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2009년 6월 KT와 KTF의 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선사업자 대표투자보수율 산정대상인 KT의 회사전체 투자보수율이 더 이상 대표투자보수율이 될 수 없음
- 그리고 KT 및 LG텔레콤 합병 등 통신사업자간 합병의 증가는 대표투자보수율의 적용도 어렵게 함
- 이미 합병이 완료된 KT와 LGT의 경우 합병후 유·무선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므로 유선 또는 무선 대표투자보수율을 일괄적으로 한 회사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다. 데이터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필요성 증대

- 이통서비스가 음성중심에서 데이터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원가기반 음성 및 데이터 요금규제를 위한 회계분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음성과 데이터는 영업보고서상 회계분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02년부터 접속원가 산정시 원가분리 실시
- 음성전화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고도화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 실질적인 구분이 모호하였으며, 과거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이통사업자가 별도 허가없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간주(정

통부 유권해석 '03. 11)한 바 있음

- 회계분리는 수익과 비용, 자산의 서비스별 분리를 의미하며, 원가분리는 비용 및 자산의 분리만 해당하고 수익의 분리는 필요하지 않음
- 접속료 원가분리는 '02년도 접속료 산정('02~'03년분)시부터 데이터서비스 원가분리를 수행하여 왔음
-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배부비율을 정책적으로 결정
-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방안 도출이 필요
- 현시점에서 음성데이터의 합리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수익배부가 어려우며, 수익 배부방식에 따라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의 원가보상율의 편차가 심하게 변화할 수 있음
- 또한, 접속원가 산정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하기 어려움
- 특히, 이동통신망의 경우 음성/데이터가 하나의 망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점차 All-IP화 되어가는 추세이므로 음성/데이터의 회계분리는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리고, NGN하 음성서비스와 PSTN망의 음성서비스 원가차이는 요금차이를 유발하여 경쟁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

라. All-IP환경에 대비한 회계분리대상 역무체계의 검토 필요성 증대

- 정보통신시장은 최근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중에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하나의 통신망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All-IP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현재 데이터통신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유선통신서비스는 정체되고 있고,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음
- o 과거의 시장구조에 기초한 기존의 통신사업분류 및 역무구분과 이에 따른 규제제도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 o 향후 All-IP환경에 대비하여 통신산업의 발전과 망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회계분리대상 역무체계의 마련이 필요

2. 연구목적

- o 국제회계기준(IFTS)의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규정 개정(안) 도출
- o 투자보수율 산정 및 적용 개선방안 도출
- o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회계규정 개정(안) 도출

제 2 절 연구 범위

- o 국제회계기준(IFTS)의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규정 개정(안) 도출
- 국제회계기준과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분석
- 통신규제회계와 K-IFRS간 정합성 검토
- K-IFRS와 통신회계규정의 차이조정방안 마련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도출
- o 투자보수율 산정 및 적용 개선방안 도출
- 2008회계연도 투자보수율 산정
- 역무별 투자보수율 산정방안 제시
- 투자보수율 산정 및 적용 개선방안 도출
- o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회계규정 개정(안) 도출
-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방안 검토
- All-IP환경에 대비한 회계분리대상 역무체계 검토

제 2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제 2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제 1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

-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의 원가산정,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료·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를 위한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함) 제3조)
- 즉,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정책수립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역무의 원가정보를 포함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것임
- 특히 규제제도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이됨에 따라 규제회계제도가 생성하는 회계정보는 사후규제 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됨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관련 법체계

- 현재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관련 법체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으로 구성

< 그림 2-1 >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현행 법체계



- 회계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행하여야 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과 기본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회계규정은 주로 회계적 사건에 대한 인식과 측정, 즉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임
- 회계분리기준은 수익, 비용 및 자산을 배부기준에 따라 세부역무별로 배부하는 실제적인 회계분리 방법을 제시
- 회계분리기준은 주로 회계처리이후 산정된 수익, 비용, 자산등의 역무별 회계분리에 대한 내용임

3.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와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

- 전기통신사업 회계는 재무회계와는 달리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한정되어 적용되고 그 정보이용자도 일반 대중이 아니라

사업자 및 규제기관임

-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통신회계기준은 최종적인 회계대상이 법인 단위인 재무회계와 달리 개별 서비스별임
- 통신회계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회계규정과 회계분리기준에 의한 역무 또는 서비스별 회계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가회계 및 관리회계의 성격을 가짐
- 전기통신산업의 특성상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공동원가 및 공동수익의 회계분리가 중요
 - 기능별, 역무별 또는 서비스별로 구분하는 것을 회계분리라 하는데 회계분리는 전기통신회계제도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전기통신사업회계의 결과물은 일반적인 재무제표가 아닌 영업보고서임

< 표 2-1 > 전기통신사업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구분	통신회계	재무회계
목적	규제목적 달성	재무적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	규제기관, 당해사업자	투자자, 금융기관, 일반 대중 등
관련 규정	회계규정, 회계분리기준 등	기업회계기준, 회계준칙 등
수익·비용 인식	개별 역무별	회사 전체
성격	원가회계	일반회계
결과물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제 2 절 통신회계제도 연혁 및 주요내용

1. 현행 법체계

- 정보통신부는 90년대 초 전기통신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경쟁, 요금, 접속, 설비제공, 설비공동사용 등의 제반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음
-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제반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회계제도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보통신부는 1994년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을 제정
- 이후 수차례의 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관련 법체계는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함)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하 “회계분리기준”이라 함), 회계분리기준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계분리지침서」로 이루어짐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및 주요내용

가. 회계규정

- 1991년 8월 전기통신 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회계규칙은 1994년 8월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2008년에 “회계규정”으로 재고시됨
- 1994년 최초 제정시에는 기간통신사업자 회계분리를 제도화하고, 영

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명시

- 1996년에는 1차 개정시에는 고정자산 및 비용의 역무별 분류와 전화 역무별 분류 내용이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에 위임되었고, 회계분리대상 역무수가 변경
- 이후 2001년에 2차 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이 공정경쟁을 위한 회계정보 제공라고 명시하였고, 회계분리대상 역무수를 또다시 4개로 변경
- 2005년 3차 개정에서는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기관의 변경과 무형자산 분류의 변경 및 인터넷접속역무와 인터넷전화역무 추가

나. 회계분리기준

- 총칙을 포함하여 총6장으로 구성된 회계분리기준은 1996년 6월 최초 제정되어 현재까지 6차 개정에 이르고 있음
- 최초 제정시의 주요내용은 20개의 회계분리대상 서비스 규정과 내부 거래가격의 제정 및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등을 규정
- 2001년 1차 개정시에는 회계규칙 2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회계분리대상 서비스 확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총괄원가의 정의 및 범위 신설, 통신위원회 산하 회계전문위원회 설치, 판매촉진비 상한에 관한 규정들이 추가 또는 신설
- 2005년 1월 2차 개정시에는 전화부가서비스 등의 세부 역무 추가하고,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일부 수정
- 2005년 12월에는 회계규칙 3차 개정의 개정사항들을 반영한 회계분리기준 개정

- 2006년 12월의 4차 개정시에는 무선통신역무에 와이브로가 추가되었고,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와 광동축혼합망 관련 배부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
- 2007년 12월 5차 개정시에는 별정통신역무 분류 삭제를 포함한 역무 통합에 따른 세부역무 정의 개정, 광동축혼합망의 기능별 분류 신설, 광동축혼합망 및 IP기반서비스의 역무별 원가배부기준 신설, 감가상각방법 및 내부거래제도 개선, 설비사용료 및 무형자산상각액의 기능별 분류 개선, 공통자산 및 운영비의 배부조항 개정 및 별지서식 수정등의 개정
- 2009년 12월 개정시에는 경영자 인증제도 도입, 배부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전송·중계선로운영비용 및 판매영업 공통비 배부기준 변경, 콜센터 원가 별도 집계 및 배부, 대리점수수료 및 단말기보조금 직접 역무 할당 의무화, 인건비 분류기준 세분화, 합병후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영업권 인식범위 명시, 결합판매 수익 배부기준 명확화 및 결합판매서비스 공통 배부기준 신설, 요금원가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율을 회계분리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토록 개정

< 표 2-2 >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의 변천

시기	법령(고시)	제정 및 개정 내용
1991년 8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	•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 • 요금산정의 공정성: 상호내부보조, 가격요소조작, 비용전가 금지
1994년 8월	회계규칙 제정	• 기간통신사업자 회계분리의 제도화: 통신역무간 회계분리 • 회계분리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 • 총칙을 포함하여 총6장으로 구성
1996년 5월	회계규칙 1차 개정	• 고정자산 및 비용의 역무별 분류와 전화역무별 분류 내용을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에 위임 • 회계분리대상 역무를 8개에서 7개로 변경
1996년	회계분리기준	• 세부서비스 도입으로 회계분리대상 서비스를 20개로 규정

6월	제정	• 내부거래가격의 제정 •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2001년 3월	회계규칙 2차 개정	•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을 공정경쟁을 위한 회계정보 제공으로 명시 • 7개 역무를 4개로 바꿈
2001년 3월	회계분리기준 1차 개정	• 회계규칙 개정 사항의 반영 • 회계분리대상 서비스를 20개에서 27개로 확대 •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규정 • 총괄원가의 정의 및 범위 신설 • 통신위원회 산하 회계전문위원회 설치 •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 추가
2005년 1월	회계분리기준 2차 개정	• 전화부가서비스 등의 세부 역무 추가 •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일부 수정
2005년 12월	회계규칙 3차 개정	•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기관이 정보통신부장관에서 통신위원회로 변경 • 무형자산 분류의 변경 • 인터넷접속역무 및 인터넷전화역무 추가
2005년 12월	회계분리기준 3차 개정	• 회계규칙 개정 사항의 반영
2006년 12월	회계분리기준 4차 개정	• 무선통신역무에 와이브로 추가 •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조항 신설 • 광동축혼합망 관련 배부기준 신설
2007년 11월	회계규칙 4차개정	• 영업수익, 비용등의 분류 개정 및 신설 •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개선 • 역무별 회계분리의 대상역무 개정 • 정보처리설비의 정의 개정
2007년 12월	회계분리기준 5차개정	• 역무통합에 따른 세부역무 정의 개정(별정통신역무 분류 삭제) • 광동축혼합망의 기능별 분류 신설 • 광동축혼합망 및 IP기반서비스의 역무별 원가배부기준 신설 • 감가상각방법 및 내부거래제도 개선 • 설비사용료 및 무형자산상각액의 기능별 분류 개선 • 공통자산 및 운영비의 배부조항 개정 • 별지서식 수정
2008년 2월	회계규칙을 회계규정으로 변경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법령 재고시(기존 법령과 내용은 동일)
2008년	회계분리기준	

5월	개정	
2009년 12월	회계분리기준 개정	• 경영자 인증제도 도입, 배부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전송·중계선로 운영비용 및 판매영업 공통비 배부기준 변경, 콜센터 원가 별도 집계 및 배부, 대리점수수료 및 단말기보조금 직접 의무 할당 의무화, 인건비 분류기준 세분화, 합병후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영업권 인식범위 명시, 결합판매 수익 배부기준 명확화 및 결합판매서비스공통 배부기준 신설, 요금원가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율을 회계분리기준에 근거하여 산정

제 3 절 '09년 12월 회계분리기준 개정 주요사항¹⁾

1.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

가. 회계분리관련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범위

- 회계분리지침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회계분리기준에 명시
- 회계분리지침서의 경우 영업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에게 공개하여 사업자별로 동일한 배부기준 및 동일한 원가산정방식의 설정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자간 공평성, 원가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가능
- 회계분리지침서의 공개로 사업자간 비교가능성·원가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증대가 예상되며, 회계분리에 미숙한 후발 사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서비스별 원가산출 능력 배양의 기회 부여가능

1) 이상우 외(2009), 융합화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9. 11.

나. 배부기준 변경내역 및 변경효과 명시

-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부기준 변경내역 및 변경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배부기준 변경 타당성 검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먼저, 회계분리지침서에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전·후 배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회계분리기준 제41조 제2항을 개정하고, 영업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에 별지 제17-1호(배부기준 변경전) 및 제17-2호(배부기준 변경효과)를 추가
- 배부기준 변경을 위한 정당한 사유는 사전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는 회계분리지침서의 사전검토 및 영업보고서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현행 유지
- 또한 사업자는 방통위에게 정당성을 소명하고 방통위는 소명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정당성을 판단

다. 내부거래 대상 역무 범위 및 대가

- 내부거래란 고객에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자내의 특정역무 및 서비스가 다른 역무 및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거래를 말함
- 이러한 내부거래는 내부거래를 인식한 역무별 회계분리를 통하여 서비스간 상호보조여부를 감시하고 내부거래단가와 타사업자간 거래단가를 비교하여 불공정경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
- 하지만 내부거래는 내부거래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한도에서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 내부거래는 규제대상서비스에 대해 타사업자가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대가로 거래하도록 하여 역무간 상호보조를 방지하고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
- 따라서, 무분별한 내부거래로 인해 서비스별 손익에 왜곡이 발생한다면 회계정보의 유의성을 저하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o 따라서 내부거래 관련 조항의 2007년도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내부거래대상서비스는 현행을 유지하여 접속통화요율을 가지는 서비스로 한정하되, 기타 내부거래의 인식이 원가·효익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필요한 경우 원가에 기반한 단가로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2007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시 원가율에 의한 내부거래를 일부 인정했듯이 직접적인 원가배부가 어려운 경우 원가기반의 내부거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약관에 근거한 내부거래시 발생가능한 원가왜곡 및 역무간 상호보조를 사전적으로 방지
- o 한편 KT의 망감시회선은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소비사업용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망감시회선의 경우 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일부이므로 해당서비스로 원가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망감시회선의 경우도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 내부거래로 인식

라. 운영절차 개선을 위한 경영자 확인제도 도입

- o 통신사업자가 방통위에 영업보고서 제출 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거짓 또는 왜곡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경영자(CEO/CFO) 확인서명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이는 회계분리 및 보고에 대한 의무를 경영자에게 주지시키고, 영업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2. 원가분류방법 및 배부기준의 합리적 개정

가. 공통비 배부기준의 명확화

- o 인과관계가 높은 배부기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되, 회계분리기준에 제시된 배부기준 중에서 전혀 적용가능성이 없는 배부기준은 삭제하여 원가배부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원가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임
- 전송운영공통비 배부기준중 “직접 분류된 전송설비 취득가액 비율 또는 사용시간”은 직접 분류된 전송설비 취득가액 비율에 우선순위를 둠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전송/선로운영비용 배부기준 중 “사용량 또는 대역폭 비율”에서는 사용량에 우선순위를 둠
- 정보처리운영공통비 및 정보처리기능설비 배부기준중에서 “대역폭”에 우선순위를 둠
- o 회계분리기준상 제시되어 있으나 전혀 적용가능성이 없는 배부기준은 삭제
- 교환운영공통비 배부기준중 “기집계 교환비용 비율”은 삭제하고, 교환운영공통비는 교환기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우선 적용하고, 비용발생이 인건비 또는 인원수와 관련이 있을 경우 교환인건비 또는 인원수 비율에 의해 배부하며, 그 외의 경우는 모두 교환기능설비 취득가액비율을 적용하여 배부하므로 기집계 교환비용 비율은 적용가능성이

없음

- 따라서, 교환기능설비 배부기준중 “교환기 수용가입자수 비율”은 삭제하고, 교환기능설비도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우선 적용한다. 그 외의 경우는 모두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을 적용하므로 “교환기 수용가입자수 비율”은 적용가능성이 없음
- o ‘불가능한 경우’, ‘어려운 경우’ 등의 문구를 ‘불가능한 경우’로 통일

나. 전송 및 중계선로 운영공통비 역무별 배부기준 개선

- o 운영비용은 속도환산 회선수와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행 E1급 환산회선수 적용시의 원가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계구간의 전송 운영공통비 및 선로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을 공통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로 수정
- 여기서, 공통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이란 직접 할당한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과 공통설비를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에 의해 배부한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의 합을 의미
- o 운영비용은 주로 해당 설비의 운영,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고, 일반적으로 운영공통비는 관련 설비의 역무별 취득가액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음
-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배부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회계적 특성에 맞추어 자산은 감가상각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하고, 비용은 취득가액과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취득가액 비율’로 배부기준을 수정

다.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배부기준 개선

-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는 인과관계를 반영하여 역무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비율로 수정하여 공통비를 배부
- 판매촉진비 자체가 신규가입을 위해 지출되는 것이므로 신규가입자 요금수익을 기준으로 공통비를 배부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방안이기 때문

라. 대리점 수수료 및 단말기보조금 직접 할당

- 대리점수수료 및 단말기보조금은 직접 역무로 할당하도록 고시 규정
에 명시하여 서비스별 원가의 정확성을 높임
-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판매촉진비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결합판매 활성화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커질 것임
- 따라서, 서비스별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대리점수수료를 역무별로
직접 할당하여 전표를 발생시키는 것이 공통비를 줄임
- 결합서비스 관련 비용은 직접비라고 하더라도 일단 “결합판매서비스
공통”으로 분류한 후 직접 할당하도록 하여 결합서비스관련 비용의
전체규모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과열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말기보조
금을 포함한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용 세부 명세서를 별지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콜센터 원가 분류 기준 개선

- 가입자와의 전화응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콜센터에 대해서는 원가집합을 별도로 구분하여 인과관계가 높은 상담건수를 배부기준으로 배부
- 역무별 사업환경에 따라 가입자당 가입자관리비용에 차이가 발생함에도 모든 가입자관리비용을 인과관계가 동일함을 가정하고 가입자수비율로 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합병후 통합콜센터가 구축될 경우 공통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정확한 원가배부를 위해서는 콜센터를 별도 집계하여 상담건수비율이 인과관계가 가장 높으므로 가입자관리비용에서 콜센터의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상담건수에 의한 원가배부는 실질적인 업무분장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바. 인건비 분류기준 세분화

- 기존 회계분리기준에는 반기초 업무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량이 적은 부수업무(사내 판매 등)의 경우 업무량 반영이 어려웠음
- 분기초 업무분석을 도입하고, 시간투입비중을 1/100단위로 표시
- 원가배부기준으로서의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인건비 분류기준의 세분화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업무량 반영이 어려운 부수업무(사내 판매 등)에 대한 분류를 유도

3. 합병 및 결합판매 증가 등 시장상황 반영

가. 합병후 영업보고서 제출 근거

-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합병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원가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함
- 통신사업자간 합병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원가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합병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해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한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가 필요

나. 합병시 영업권 인식 근거 마련

- “인수합병에 의해 발생한 영업권은 전기통신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식별 및 측정이 개별적·객관적으로 가능하며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산가치만을 전기통신사업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고 규정
- 단,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에서 인정되는 영업권을 한도로 함. 이는 정책의 일관성차원에서 기존의 정책적 판단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음
- 재무회계에서 발생한 영업권 금액은 합병회사가 투자한 취득금액이라는 점에서 일정부분을 전기통신사업의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
- 하지만 망 통합 및 공동투자로 인한 효율성 향상, 유통망 및 R&D 능력통합에 따른 효율성 향상은 객관적인 산정이 어렵고 그 실현이 기

업경영전략 등에 따라 미래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며 요금원가에서 제외

다. 결합판매 수익 배부

- o 결합판매 수익 배부시 할인율 및 할인금액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고 결합판매 심사(심사간소화 포함)를 받은 경우 심사결과 할인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

라. 결합판매 공통비 배부

- o 결합판매에 해당하는 공통역무를 신설. 이를 통해 전사전체공통역무로 분류하여 인과관계가 없는 역무로 배부하는 왜곡을 방지하도록 하되, 판매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서비스기능비용에 대해서만 결합판매서비스공통을 분류
- 인원업무분장의 경우 인건비의 기능/역무 분류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판매영업 및 고객서비스기능에 대해 '결합판매서비스공통'이 필요
- o "결합판매서비스공통"의 배부기준은 역무별 배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결합판매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한정
- 예를 들어 결합판매서비스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는 결합판매서비스에 해당하는 세부역무별 결합판매 신규가입자 요금수익으로 배부
- 이는 결합판매서비스공통 원가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배부를 통해 정확한 서비스별 원가산정을 도모하고, 결합판매서비스관련 비용의 규모를 파악하여 결합판매관련 규제정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마.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삭제

- 지역별 회계분리란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역무의 경우 전국사업자는 지역별로 자산·비용을 분리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함
- 지역별 회계분리는 적용대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사문화되어 있으므로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를 삭제
- 현실성 없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법률해석상 오해를 줄이고 실무적 용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기준의 현행화를 유도

바. 투자보수율 산정관련 단서조항 삭제

- 통신회계정보의 근간인 회계분리기준에 의해 투자보수율이 산정되도록 제36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투자보수율을 정하도록 함
- 회계분리기준이 요금 및 모든 원가 및 대가 산정(접속료, USF분담금, 설비제공대가 등)의 기준이 되는 고시이므로 회계분리기준에 의해 투자보수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각종 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본연의 목적이 달성 가능
- 결합 및 융합환경하에서 상대적으로 회계분리기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호접속기준에 의한 투자보수율을 결정하는 것보다 회계분리기준에 의한 투자보수율을 결정하여 회계분리기준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환경을 고려한 측면에서도 바람직

- 단, 매년 투자보수율을 산정할지는 방통위의 정책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문화는 하지 않으나, 최근의 시장 및 경쟁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매년 투자보수율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규제에 이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투자보수율 관련 조항을 담고 있는 고시들은 각 대가 산정 및 해당 고시 개정시 관련 조항을 수정

사. 별지서식 보완

- o 경영자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 및 결합판매 관련 별지서식 보완, 유형자산 등에 대한 형태/기능, 형태/역무에 대한 서식 추가, 배부기준 변경효과 관련 별지서식 보완 등
- 특히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과열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말기 보조금을 포함한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용 세부 명세서를 별지서식 (제 10-2호)에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

제 3 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분리기준 개선방안

제 3 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분리기준 개선방안

제 1 절 국제회계기준 개요

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²⁾

가. 국제회계기준(IFRS)의 개념

- o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을 말함
- 전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있는 재무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³⁾)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은 전 세계 기업들의 재무정보가 국제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작성 및 전달됨으로써 정보이용자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⁴⁾

2) 본 보고서의 IFRS관련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및 자료(“현행 기업 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차이와 영향분석” 등)를 참고하였음

3) 2001년 IASC의 역할을 계승하여 새로운 기준서인 IFRS를 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기구. 현재 EU를 중심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미국4, 영국2, 프랑스2, 호주, 스웨덴, 남아공,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각1명)

4) paragraph 6 of Preface to IFRS

- IFRS는 대다수 국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정되는 기준임
- IASB는 기준 제정과정에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
- 세계 자본시장의 참여자 및 기타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원

나. 외국의 IFRS 도입추이

- IFRS가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준으로 인식되어 전세계 110여개국이 IFRS를 수용 또는 수용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2011년에는 IFRS수용국이 150여국에 이를 예정
- 유럽연합(EU)은 금융시장 통합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IFRS를 도입

< 그림 3-1 > IFRS의 해외 도입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미국의 경우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를 중심으로 미국회계기준 (US GAAP)과 IFRS의 합치 및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력함

- 2007년 11월 미국 SEC는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US GAAP과의 차이조정 의무를 면제
- 2008년 8월 미국 SEC는 자국기업의 IFRS 단계별 의무적용계획을 발표(상장대기업 2014년 12월 15일 이후, 상장 중기업 2015년 12월 15일 이후, 상장소기업 2016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
- 일본은 2005년 3월에 일본회계기준위원회와 IASB간의 회계기준합치에 대한 합의 이래로 2011년부터 IFRS를 선택적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 진행 중

다. IFRS 도입배경

- o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대우사태 등의 경험을 거친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거의 유사한 회계기준을 갖게 되었으나, IASB는 우리나라를 국제회계기준을 허용하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저평가되고 있음⁵⁾
-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IFRS를 준거하여 제정하여 왔으나, 전면 도입방식이 아니라 IFRS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의 한국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식이었음
-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IMF와 IBRD의 요구에 따라 IFRS 도입로드맵 발표시점('07.3월)까지 28개 기업회계기준서를 제정(회계전문가들은 내용적으로 90%이상 수용한 것으로 평가⁶⁾)하였으나

5) 이용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현황, 우정정보 70(2007 가을), P1

-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IFRS 사이에는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일부 차이가 존재하여 국제회계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함
- o 전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2007년 3월 당시 EU, 호주, 캐나다 등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수용 또는 수용할 예정이었음
-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었음
- o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목적
-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회계 선진화를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기초언어인 회계처리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달라 외국인 등이 한국기업의 회계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 왔음
-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회계기준 미흡’ 요인을 제거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음
- o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작성 부담 경감
- 국내기업이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해당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받게 되므로 기업부담이 발생하나

6) 공정가치평가의 제한적 도입,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운용, 독자적 규정(배열)체제 등 일부 내용 및 기준형식을 국내현실에 맞게 수정·반영

-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국내법규에 의한 재무제표를 국제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중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부담이 없어짐

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 o 국제회계기준(IFRS)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는 그 내용이 동일하나, 한국의 법체계에 맞추어 형식을 다소 변경
- K-IFRS는 영어버전의 IFRS 원문을 직역(word for word)한 것으로 원문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음
- 기준서 및 해석서 번호, 적용범위, 경과규정 등 형식적 차이만 존재
- o 국제회계기준이 허용하는 모든 회계처리대안을 국내기업에게도 허용하는 무수정 도입방식을 채택
- 선택적 회계처리대안으로 제시되는 복수의 회계처리방법 중 일부를 삭제하여 도입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국내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효익이 국제회계기준과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무수정 도입방식 채택
-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지 않는 공시사항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기업의 추가공시에 따른 비용에 비해 사회적 효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적 공시를 요구한 사항은 없음
- o '07.3월 IFRS 도입로드맵을 발표하고 '09.2월 외감법 개정을 통해 「한국도입국제회계기준(K-IFRS)」 공식 도입

- 희망기업에 한하여 '09년부터 조기적용 가능하며 '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09년 14개사, '10년 27개사 예정)

마. 일반기업회계기준

- o 현재는 모든 기업에 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고 있으나 K-IFRS 도입과 함께 '11년부터 비상장기업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Local GAAP)을 적용함에 따라 회계기준이 이원화됨
-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저축은행·리스·신기술·할부금융사 제외)는 K-IFRS를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 비상장기업은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간명한 회계처리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적용⁷⁾
- o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으로서
- 국제기준에 근접한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였고
- 회계주제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음

7)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원하는 비상장기업은 금융당국의 승인이나 신고절차 없이 적용가능

2. 국제회계기준과 기존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분석

-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standards)임
 - 개별사안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Principle-based)하는데 주력함
 -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 규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계기준 당국은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원칙중심 기준체계를 마련
 - 반면, US-GAAP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하고 있음
 -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정 원칙을 표방(IASB Chairman David Tweedie (2007))
 - 회계기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기준내에서 예외 규정을 지양
 - 회계기준내에서 목적과 핵심원칙을 명확하게 기술
 - 회계기준서간 일관성을 유지
 -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개념체계와 다른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

- 규정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며, 판단하고 선택한 방법과 이유에 대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음
-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공
-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중심임
 -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므로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작성됨
-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 평가(fair value accounting) 중심임
 - 국제회계기준의 핵심내용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은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표 3-1 >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의 주요 차이점

K-GAAP(현행)	K-IFRS
◇ 기업간 회계처리의 일관성 중시	◇ 경제적 실질의 반영을 중시
① 상세 회계처리방법 제시 -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 제시	① 원칙 중심 규정 - 회계처리의 기본원칙만 제시 - 복수의 회계처리방법 허용
②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기업의 회계 부담을 감안한 간소한 회계처리 허용 * 개별 국가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국가간 비교에 부적절	②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만 인정 * 개별 국가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만 인정하여 국가간 비교에 적절

제 2 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개선 필요성

1.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규제회계정보 변경

- 통신회계기준⁸⁾은 규제의 필요에 따라 회계처리방식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회계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

회계규정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략-
3. 이 영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 통신회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항목은 회계분리기준 제7조(유형 자산 등의 취득)와 제8조(감가상각방법)뿐임
- “유형자산 등의 취득”은 규제회계정보 산출시 역사적 원가⁹⁾에 기반하기 위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 “감가상각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규제목적상 객관성과 비교가능

8)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함)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하 “회계분리기준”이라 함)을 말함

9) 취득의 대가로 취득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하는 측정기준중의 하나임

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원가수준을 담보하기 위함임

- o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은 기업의 회계처리 변경을 가져오고, 이는 통신회계정보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통신회계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산평가방법) 현행 K-GAAP은 역사적 원가 평가중심인 반면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하여 자산가치에 매우 큰 변화 발생 가능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영업권 포함)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현행 GAAP하에서는 영업권을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영업권 포함)에 대해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고 손상평가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원가수준에 변화를 가져옴

회계분리기준

제7조(유형자산등의 취득)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한다.

1.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받은 유형자산등은 공정가치로 계상한다.
2. 유형자산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성자산의 공정가치비율을 기초로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으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인수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인수합병에 의해 발생한 영업권은 전기통신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식별 및 측정이 개별적·객관적으로 가능하며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산가치만을 전기통신사업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제8조(감가상각 방법) 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송매체 선로설비(동선, 광케이블 등) 및 전원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한다.
2. 전주, 관로, 맨홀 등 선로포설설비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한다.
3. 단말설비 및 정보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외의 유형자산등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등은 법인세법에 따른다.

2. 원칙중심의 IFRS 도입으로 인한 비교가능성 저하

-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원칙(Principle)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하므로 비교가능성 저하가 우려됨
- 현행기업회계기준은 특정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Rule)함으로써 유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모두 동일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 IFRS기준 하에서는 유사한 거래라 하더라도 기업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회계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
- 따라서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을 가정한 현행 통신회계제도에서 원칙중심의 IFRS에 따른 회계처리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가입비 수익 인식) 현행 GAAP하에서는 가입비 수익을 수취시점에 전부 인식하지만,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용역의 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인식하도록 원칙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제시하지 않음

3. 기업회계기준의 이중화로 사업자간 비교가능성 저하

-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2011년 이후에는 통신회계제도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복수가 되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됨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이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되는 2011년 이후에는 상장사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비상장사를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화¹⁰⁾하게 되어 상장사와 비상장사간의 비교가능성 저하가 예상됨

< 표 3-2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의 변화

구분	현행	IFRS 도입이후
상장사	현행의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비상장사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적용 가능)

- (퇴직급여 채무 측정) 퇴직급여 채무 측정시 K-IFRS는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현행 K-GAAP과 같이 청산가치 개념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상장사와 비상장사간의 차이 발생

10) 기업회계기준 전문 16: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전에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으로 구성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으로 구성.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기업회계기준’, ‘업종별 회계처리 준칙 등’ 및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등으로 구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은 각각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구성되며, 기준의 본문은 아니지만 실무적용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지침 등을 제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은 향후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근간을 이루게 되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을 대체하게 됨

제 3 절 국제회계기준과 통신회계기준 차이 조정방안

1. 통신규제회계와 국제회계기준 정합성 검토

가. 중도적 접근방법

- o IFRS도입에 따른 통신회계기준 개정방법으로는 독립적 접근방법, 의존적 접근방법, 중도적 접근방법¹¹⁾이 있으나 중도적 접근방법이 바람직함

< 표 3-3 > 통신회계기준 개정방법

구분	내용	장단점
독립적 접근방법 (independent approach)	기업회계기준인 IFRS 규정과 독립적으로 통신회계규정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법	- 이 방법은 통신회계의 목적과 원칙에 적합한 규정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음 - 현행 통신회계기준의 체계와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함
의존적 접근방법 (dependent approach)	IFRS에 따라 통신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 IFRS 도입목적과 통신회계제도 적합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중도적 접근방법 (quasi-dependent approach)	IFRS를 따르되 통신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히 규정하여 통신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 현행의 통신회계기준 정립 방식 - 외부감사를 수행한 회계처리결과에서 검증하므로 검증의 효율성이 높아짐 - 통신회계기준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짐 -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11) Newton, David, IFRS: Tax implications for the EU financial services industry—are you ready?, PriceWaterHouseCoopers, 2006.11. 참조

- 독립적 접근방법은 기업회계기준인 IFRS 규정과 독립적으로 통신회계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법
- 의존적 접근방법은 IFRS에 따라 통신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 중도적 접근방법은 IFRS를 따르되 통신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히 규정하여 통신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나. IFRS의 도입목적과 통신회계제도의 적합성 측면

- IFRS의 도입목적은 경제적 실질을 강조하여 주식투자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정보를 마련하기 위함임
- 먼저 IFRS는 투자자 중심으로 해당기업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적 실질을 제공하려는 미래지향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통신회계제도의 회계정보는 역사적 원가정보의 유지를 전제로 함
 - 이는 객관성과 신뢰성 그리고 비교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규제회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일부 사업자는 재평가법을 도입하고 일부 사업자는 재평가법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회계정보의 산출물인 영업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저해될 것임
 - 또한 현재 접속원가 및 보편적서비스손실보전금 등은 현행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통신회계기준에서의 역사적원가기준의 유지가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저해하지는 않음
 - 공공요금 산정시에도 자산재평가는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않음을 원칙

으로 하고 있음

공공요금산정기준

보칙 4. 4. 자산재평가는 적정원가(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 산정에 모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투자 재원마련의 필요성등을 감안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그리고 통신회계제도는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가간 비교가능성보다는 규제대상 사업자별로 동일한 규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중요
- 결국 IFRS의 기본전제가 통신회계의 목적적합성 및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IFRS의 규정을 기업회계와 통신회계에 모두 받아들이는 의존적 접근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의 설정 측면

- 가장 이상적인 통신회계기준은 IFRS 규정과 관계없이 통신회계의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적 접근방안임
-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2011년 이후에는 통신회계제도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복수가 되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됨
- 따라서 재무제표 구성항목의 정의와, 인식 및 측정방법을 “회계규정”에 직접 제시하고, 역무별 회계분리 방법 등을 “회계분리기준”에 제시하는 것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신회계기준의 체계와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회계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장사는 IFRS, 비상장사는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규제목적상 두 기준간의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하는 중도적 접근방안이 바람직함
- 이 경우 기업회계시스템과 통신회계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 외부감사를 수행한 신뢰성이 확보된 회계처리결과에서 출발하여 회계분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검증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며
- 국제회계기준 자체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중이므로 통신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개정은 통신회계기준의 개정을 필요치 않으므로 통신회계기준의 지속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통신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IFRS를 적용하는 상장사의 경우 예측관련 사항 등 기업의 재량권은 여전히 존재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통신회계제도의 중장기적인 개선이 요구됨

2. 통신회계기준상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정립

가.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기업회계에서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속성은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임¹²⁾

- (1) 이해가능성. 이용자가 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복잡한 내용의 정보이지만 다수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지 그 정보가 일부 이용자에게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아야 함
- (2) 목적적합성. 이용자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을 평가하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도와주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함. 정보의 목적적합성은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영향을 받음.
- (3) 신뢰성. 정보에 중요한 오류나 편이가 없고,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낼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

(가) 충실한 표현

(나)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단지 법률적 형식만이 아니라 그 실질과 경제적 현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표시하여야 함

(다) 중립성. 편이가 없어야 함

(라) 신중성.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추정에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경우,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함

(마) 완전성. 정보가 누락되면 그릇되거나 오해를 유발하여 신뢰성이 상실되고 목적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12) K-IFRS 제1000B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p8

- (4) 비교가능성. 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의 추세를 식별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기간별로 비교가능해야 하며, 다른 기업의 상대적인 재무상태와 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함. 비교가능성은 단순한 통일성과 혼동되지 않아야 하며, 개선된 회계기준의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함

나. EU의 새로운 통신정책 접근방식¹³⁾

- o NATP는 회계정보의 작성기준으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비교가능성 및 중요성을 권고
- 목적적합성(relevance): 회계정보는 그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목적에 적합해야 함. 예를 들면, 회계정보가 규제기관의 정책적인 결정의 판단기준이 될 경우, 회계정보는 판단기준이라는 목적에 적합해야 함.
- 신뢰성(reliability): 회계정보가 유용성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함.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회계의 측정과 기술의 검증가능성이나 진실된 표현에 의해 좌우되며, 중립성 또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 요건이 됨
- 비교가능성: 회계정보는 기업간 비교될 수 있어야 함
- 중요성(materiality): 회계정보는 선택·획득하여 분류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을 고려해야 함. 예를 들면, 회계정보 중 일정항목의 공개 여부, 계정과목의 통합 및 분리, 주식 포함 여부, 회계변경사항공개, 기업과 특수이해관계자간 거래명시 등을 그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

13) NATP II, Reference Guideline on Accounting Separation, 2006. 12. 7

다. 통신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통신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우리나라의 환경하에서 통신회계제도 개선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비교가능성이라 할 수 있음
- 통신회계정보의 가장 중요한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임
 -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의 대표적인 기조에 해당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¹⁴⁾ 평가는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경제적 실질을 제공하는 방안이며, 이는 기업회계상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목적적합성과 관련이 있으나 역사적 원가주의를 전제로 하는 통신회계기준의 목적과는 상이
- 신뢰성 역시 중요한 질적특성에 해당하나 통신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정보 산출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 인식 및 측정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외부감사를 거친 회계정보에 기초로 하므로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 사항은 중요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한 복구원가를 모두 취득원가로 처리하도록 한 IFRS 규정에 의해 재무회계에서 계상한 취득원가를 통신회계에 적용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중화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원칙중심(Principle-based) 기준 제시로 인한 비교가능성의 저하는 규제정보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규제목적상 비교가능성

14)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예를 들면 퇴직급여채무 측정시 IFRS에서는 보험수리적 방식으로 측정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청산가치개념으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므로,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퇴직급여채무의 측정방식이 다르고 회사마다 적용하는 미래의 임금상승률, 할인율 등이 달라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가 우려됨
- o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한 제약요인으로서의 원가와 효익간의 균형, 즉 효율성의 강조임
- 효익과 원가간의 균형이란 특정정보에서 기대되는 효익은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
- 효익과 원가에 대한 평가에는 상당 부분 판단이 필요하므로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원가-효익 분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작성자와 이용자 그리고 특히 기준제정자는 원가와 효익의 제약요인을 고려하여야 함
- 특히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의 경우 규제회계로서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규제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을 위한 제약은 바람직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요구는 규제비용을 오히려 크게 함
- 예를 들어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급여채무 측정방식을 단일화하여 통신회계규정으로 규정한다면 상장기업 또는 비상장기업 중 하나는 재무회계의 방식과 다른 별도의 방식으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해야 할 것임

-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임. 즉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비교가능성 확보라는 효익이 재무회계와 다른 별도의 방식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산출하는 비용보다 클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3. 국제회계기준과 통신회계기준 차이조정 방안

가. 기본적 개정사항 반영

- o 재무제표 명칭 변경(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사항 및 개별회사 중심의 공시체계가 연결회사 중심의 공시체계로 변화한 사항에 대한 통신회계기준 보완

나. 원칙 1: 통신회계기준의 목적에 적합한 회계기준 설정

- o 통신회계기준의 목적인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회계기준 규정 보완
- (유무형자산 재평가) 역사적 원가 기준을 유지하여 취득원가법 적용
- (영업권 상각방법) 안정적 규제원가 산출을 위해 상각을 수행하도록 내용연수 규정

다. 원칙 2: 사업자간 비교가능성 제고

- o 원칙중심의 K-IFRS 적용에 따라 기업이 세부 회계처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간 회계정보 산출결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신회계기준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자간 비교가능성을 제고

- (단말기보조금 회계처리) 비용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함

라. 원칙 3: 회계정보 산출자(사업자) 부담 최소화

- o 회계처리방식에 따른 회계정보 산출결과 그 차이가 미미하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통신회계만을 위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규정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인정
- (고객충성제도) 재무회계처리를 인정
- (퇴직급여채무측정, 가입비수익이연인식, 복구원가인식) 재무회계처리 준용

바. 예측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 검토 필요

- o IFRS를 적용하는 상장사의 경우 예측관련 사항 등에 기업의 재량권이 존재하여 신뢰성 및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해당 항목의 회계처리방법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 (퇴직급여채무측정, 복구원가인식 등) 예측관련 사항이 필요한 회계처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필요

제 4 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개정안

1. 기본적 개정사항

가. 재무제표의 명칭 변경(회계규정 제5조/제2장, 회계분리기준 제42조/제47조/제48조)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

- K-IFRS에서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임.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명칭을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표 3-4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관련 변경사항

구 분	기존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및 소급하여 재작성할 경우 비교기간의 기초재무상태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내에서 재무제표의 명칭을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내에서 다른 명칭사용가능(일반기준 2.4)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9. 12. 3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2008. 11. 0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분석”을 참고하여 재편집(이하 동일)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였으며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존손익계산서에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 등을 포함토록 함
- 기존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정보는 IFRS에서 요구하는 자본변동표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복성 있는 재무제표를 삭제

< 그림 3-2 > IFRS 포괄손익계산서 구성 항목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 통신회계기준 개선(안)

-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통일성 차원에서 통신회계기준에서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 표 3-5 > 재무제표 명칭변경 관련 통신회계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회계규정>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대차대조표, - 이하 생략 - 제2장 대차대조표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 이하 생략 - 제2장 재무상태표
<회계분리기준> 제42조 제3항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제47조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제48조 제2항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대차대조표	제42조 제3항 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 제47조 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 제48조 제2항 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나. 공시체계의 변화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

- 개별회사 중심의 공시체계가 연결회사 중심의 공시체계로 변화
-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소유지분의 관계에 따라 개별기업뿐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 지분을 이용하여 사실상 여러 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 여러 개의 기업들을 연결대상사업자라고 함) 실질에 근거하여 하나의 기업처럼 하나의 재무제표로 보고할 것을 요구

< 표 3-6 > 공시체계의 변화관련 검토

구 분	기존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주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 해당회사에 한하여 부재무제표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주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부재무제표로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할 수 있음	주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 해당회사에 한하여 부 재무제표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

□ 통신회계기준 개선(안)

- K-IFRS에서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전기통신 회계정보 산출대상이 개별재무제표 기준임을 명시

< 표 3-7 > 공시체계 변화 관련 통신회계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회계규정> 제19조(보고서의 제출) 1. 제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회계규정> 제19조(보고서의 제출) 1. <u>개별사업자의</u> 제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회계분리기준> 제2조(정의) 1.“회계분리”라 함은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역무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분리기준> 제2조(정의) 1.“회계분리”라 함은 사업자가 <u>개별사업자의</u>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역무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칙 1: 통신회계기준의 목적에 적합한 회계기준 설정

가. 유·무형자산 재평가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

- 역사적 원가로만 유·무형자산을 평가하던 기업회계기준에서 외부이해 관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거래의 실질을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08년 12월 30일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

- 투자부동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등 평가시 공정가치 평가모형 선택 가능
- o 기업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업의 재무정보는 과거의 원가정보보다는 지금 현재의 가치정보(공정가치)일 것이므로 해당자산과 부채에 대해 회계정보가 정보로서 유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
- 공정가치로 정보를 제공하여 보수주의보다 목적적합성에 비중을 둠

< 표 3-8 > 유형자산 평가방법 변경관련 검토

구 분	기 존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유·무형 자산 평가 방법 변경	원가모형(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만 인정(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IFRS와 동일 -(일반기준 10.22)

□ 통신회계기준 개선(안)

- o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하였으나 통신회계기준은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본으로 하므로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표 3-9 > 유무형자산 재평가 관련 통신회계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회계분리기준> < 신 설 >	<회계분리기준> 제7조(유형자산등의 측정) ②취득이후 유형자산등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한다.

나. 영업권(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포함) 상각방법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

- K-IFRS에서는 영업권 평가방법을 상각에서 손상평가로 변경
 - K-GAAP은 영업권의 경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내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되 20년을 한도로 감가상각하도록 하였음
 - IFRS에서는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여부를 평가하거나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그보다 더 자주손상평가를 수행하여 손상차손을 인식

< 표 3-10 > 영업권 등 상각방법 변경관련 검토

구 분	기존 K-GAAP	현행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권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여 20년을 초과하지 못함(합병회계처리준칙)	영업권 최초인식 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 K-GAAP과 동일 -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함(일반기준 12.32)
무형자산	•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 무형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내용연수는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K-GAAP과 동일 - (일반기준 11.26)

- 무형자산의 경우 현행 K-GAAP에서는 최적 추정내용연수동안 상각하도록 하였으나 IFRS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던 손상차손(현행기업회계기준상 감액손실)에 대해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의 구분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손상차손에 대한 원가인정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통신회계기준 개선(안)

- K-IFRS에서는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리라고 기대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다면 임의적으로 결정된 최대 기간동안의 자산상각은 표현의 충실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영업권 포함)에 대해 손상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은 추가비용없이 갱신가능한 상표권 등을 의미

< 표 3-11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영업권 포함) 상각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회계분리기준> 제8조(감가상각방법) ④ < 신 설 >	<회계분리기준> 제8조(감가상각방법) ④무형자산(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 포함)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하지만 통신회계기준의 기본 목적은 요금원가 산정에 있음.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영업권 포함)에 대해 상각을 하지 않고 손상평가만

을 수행한다면 사업자들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요금원가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상차손을 규제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통신회계기준에서는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o 또한 통신회계기준은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규제요금의 안정성 차원에서 회수되는 규제원가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므로 손상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3. 원칙 2: 사업자간 비교가능성 제고

가. 단말기보조금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

- o K-GAAP에서는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KT는 수익의 차감항목으로, SKT 및 LGU+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용항목으로 계상

< 표 3-12 > IFRS 도입이후 사업자별 단말기보조금 회계처리

구 분	KT	SKT	LGU+
단말기보조금	● 수익의 차감항목	● 비용항목	● 비용항목

☐ 통신회계기준 개선(안)

- o 사업자간 비교가능성 및 기간별 일관성 제고를 위해 현재와 동일하게 비용항목으로 인식하도록 함(개정사항 없음, 현행유지)

4. 원칙 3: 회계정보 산출자(사업자) 부담 최소화

가. 고객충성제도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

- 고객충성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K-GAAP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포인트 적립 및 마일리지 제도 등은 동 시점에 미래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였으나 IFRS에서는 최초매출 시 수취한 대가 중 보상점수를 제외한 후 수익인식하고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부채로 인식(즉 추후 제공될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

< 표 3-13 > 고객충성제도 관련 회계처리

구 분	기존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고객충성제도	● 고객충성제도: 최초 매출 시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고 미래 지출될 원가를 판매비와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기준서 제17호)	● 고객충성제도: 최초 매출 시 수취한 대가 중 보상점수를 제외 후 수익인식하고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부채로 인식(마일리지 회수 시 보상점수에 배분한 대가를 매출로 인식)(기업회계기준 해석서 제2113호)	GAAP과 동일 - 최초매출시 전액수익인식 (일반기준 14장)

□ 통신회계기준 개선(안)

- K-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회계처리방식에 따른 회계정보 산출결과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통신회계만을 위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규정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정(개정사항 없음)
- 다만 K-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영업보고서 보고서 작성시 현행과 동일하게 비용항목으로 인식하도록 함(현행 유지)

나. 퇴직급여 채무측정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

- K-GAAP에서는 청산가치개념으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였으나 IFRS에서는 보험수리적 방식으로 측정

< 표 3-14 > 퇴직급여채무 측정 관련 검토

구 분	기존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퇴 직 급 여 채 무 측 정	• 청 산 가 치 개 념 을 채택. 즉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퇴직시 지불해야할 퇴직금으로 계산(기업회계기준 제27조)	•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 미래의 퇴직급여추정시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GAAP과 동일 - 청산가치개념에 근거(회계기준 21.8)

- K-GAAP에서의 퇴직급여채무액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지만, IFRS는 미래에 예상되는 퇴직급여 추정시 미래의 임금상승률과, 할인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측정

하는 것임

□ 통신회계기준 개선(안)

- K-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회계처리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비교가능성의 제고를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보험수리적 방법의 측정을 강제하거나 K-IFRS 적용기업에 청산가치 개념을 강제하는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킬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규제목적상 K-IFRS 적용기업간의 비교가능성만 충족되면 소규모기업의 퇴직급여 채무측정 관련 회계처리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각각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정(개정사항 없음)

다. 가입비 수익 이연인식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

- 가입비의 경우 수취시점에 영업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용역의 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 표 3-15 > 가입비 수익 인식 검토

구 분	기존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가입비 수익인 식	● 가입비 인식: 명확한 규정 없어, '수취시점'에 모두 영업수익으로 인식함	● 가입비 인식: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나누어 인식함	● K-IFRS와 동일 -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나누어 인식

□ 통신회계기준 개선(안)

- 기존 K-GAAP과 다른 회계처리방식에 따른 회계정보 산출결과 그 차이가 미미하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통신회계만을 위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규정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정(개정사항 없음)

라. 복구원가의 인식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취득'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에 대한 복구원가에 한해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으로 인한 복구원가는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모두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한 복구원가를 모두 취득원가로 처리하도록 함

< 표 3-16 > 복구충당부채 인식관련 검토

구 분	기존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복구충당부채	복구원가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킴, 그러나, '취득'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원가만 해당. 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와 관련된 복구원가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 취득 및 설치의 결과, 유형자산을 특정기간동안 '사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에 대해 모두 유형자산 원가로 포함(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 IFRS와 동일 - 취득 및 설치, 사용한 결과 발생하는 복구의무에 대해 취득원가에 포함

- 복구충당부채란, 통신설비 구축시, 사용이후에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경우, 구축시점에서 미리 복구비용을 추정하여 자산의 원가

로 인식하는 것을 말함

□ 통신회계기준 개선(안)

- 기존 K-GAAP과 다른 회계처리방식에 따른 회계정보 산출결과 그 차이가 미미하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통신회계만을 위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규정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정(개정사항 없음)

마. 금융비용자본화

□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

- IFRS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서 원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차입원가의 즉시 비용화를 삭제하고,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으로 허용해 오던 자본화만을 인정

< 표 3-17 > 금융비용 자본화 관련 검토

구 분	기존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금융비용 자본화	•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문단6)	•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 (K-GAAP)과 동일 - 기간비용 처리를 원칙으로 함(일반기준 18-4)

□ **통신회계기준 개선(안)**

- K-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회계처리방식에 따른 회계정보 산출결과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통신회계만을 위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규정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각각의 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정(개정사항 없음)

제 4 장 규제목적에 적합한 투자보수율 산정방안 연구

제 4 장 규제목적에 적합한 투자보수율 산정방안 연구

제 1 절 투자보수율의 개념 및 정책적 함의

1. 투자보수율의 개념

- 투자보수율은 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한 자본에 대한 보상가격 (기회비용)
- 자본이용자가 자본사용대가로 부담하는 자본비용 또는 자본제공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수익률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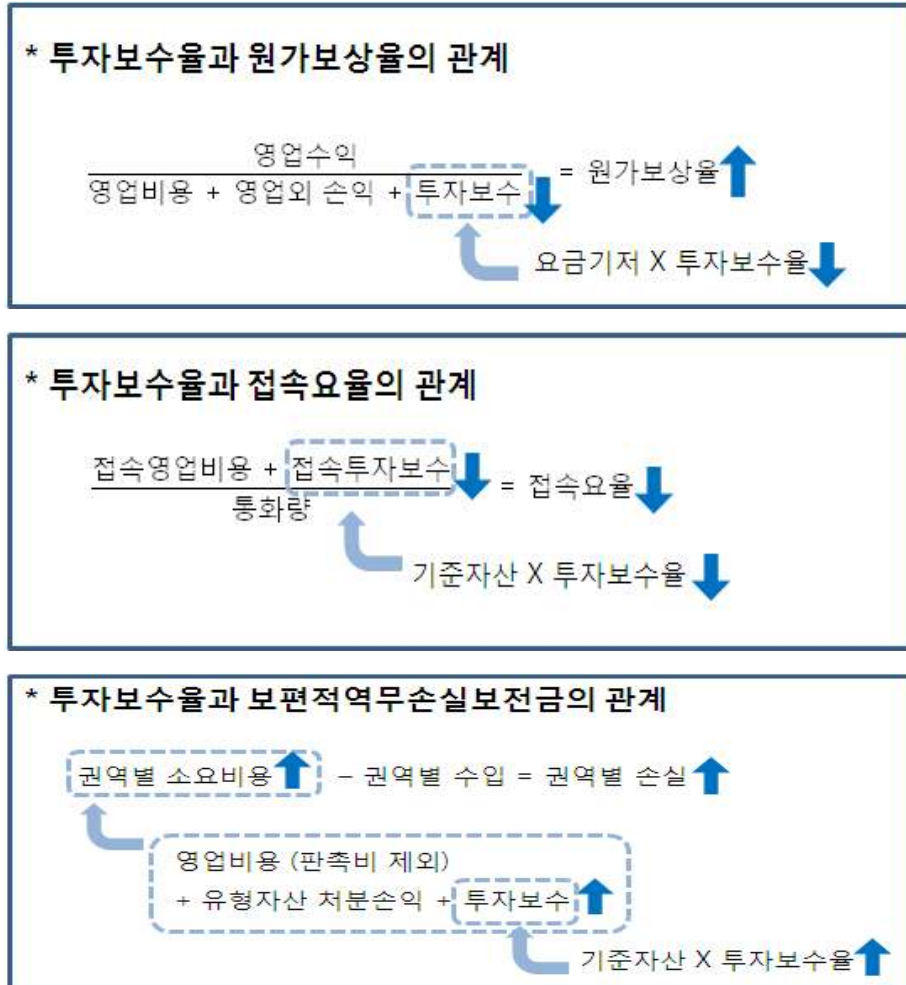
< 그림 4-1 > 투자보수율의 개념



2. 투자보수율의 정책적 함의

- 거대 장치산업의 대표적인 통신산업 경우, 투자자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여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자 투자보수 개념을 도입

< 그림 4-2 > 투자보수율과 통신경쟁 정책과의 관계



- 투자보수율은 통신사업자의 원가보상율, 상호접속원가, 보편적서비스 적자분담금 산정 등 통신경쟁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
- 요금, 상호접속료 및 보편적서비스 적자분담금 등 통신경쟁정책에 필요한 원가산정시 원가구성항목은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투자보수임
- ※ 투자보수 = 투자보수율 × 기준자산(고정·재고자산 및 적정운전자본)

3. 투자보수가 원가에 포함되는 이유

- 투자보수율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한 자본에 대한 보상 가격(기회비용)을 의미하며 투자자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여 충분한 투자를 확보하고자 도입하였음
- 투자보수는 기회비용의 개념이며, 규제산업의 경우 유사한 위험을 가진 투자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적정 수익을 보상해주어야 함
 - 유사한 위험을 가진 투자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투자수익이 적다면 투자자는 투자하지 않을 것임
 - 운영비용뿐만 아니라 자본비용에 대한 적절한 수익이 있어야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에 대해 재투자를 할 수 있으며 제공하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규제산업의 경우 합리적인 자본비용을 허용해야 함
 - 투자보수를 원가에 포함해야 경제적 관점에서 투자금액의 진정한 회수가 이루어짐
- 회계상 투자에 대한 비용항목인 감가상각비만을 회수하는 요금설정은 현재가치기준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투자금액을 적정하게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며, 투자보수까지 회수하도록 해야 적어도 현재가치를 반영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100원을 투자하여 구입한 자산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을 했다면, 5년 동안의 감가상각비 총합의 명목가액은 100원이 되지만 현재가치의 합은 77.8원 밖에 되지 않음

- 투자보수의 현재가치 합인 22.2원을 더해주어야 투자원금 100원을 회수하게 됨

< 표 4-1 > 자본비용의 현재가치 산정

연도	자산 장부가 치 (①)	감가 상각비 (②)	투자 보수 (③=①×9%)	자본비용		
				자본비 용 (④=②+③)	현재가치 요소 (⑤)	순현재가치 (⑥=④×⑤)
1	100	20	9	29	0.9174	26.6
2	80	20	7.2	27.2	0.8417	22.9
3	60	20	5.4	25.4	0.7722	19.6
4	40	20	3.6	23.6	0.7084	16.7
5	20	20	1.8	21.8	0.6499	14.2
순현재가치 (할인율 9%)	-	77.8	22.2	-	-	100

주: 정액법/내용연수 5년, 현재가치요소 = $1/(1+9\%)^n$ (이자율=9%) 가정

제 2 절 2010년 투자보수율 산정

1. 개요

- o 2010년 6월 11일에 방통위는 2008년 기준 투자보수율을 산정하여 통신사업자들에게 통보
- o 2008년의 시장정보 및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KT와 SK텔레콤 투자보수율을 산정한 후, 합병사업자의 역무별 투자보수율 적용을 위해
- KT 투자보수율을 전송역무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의 투자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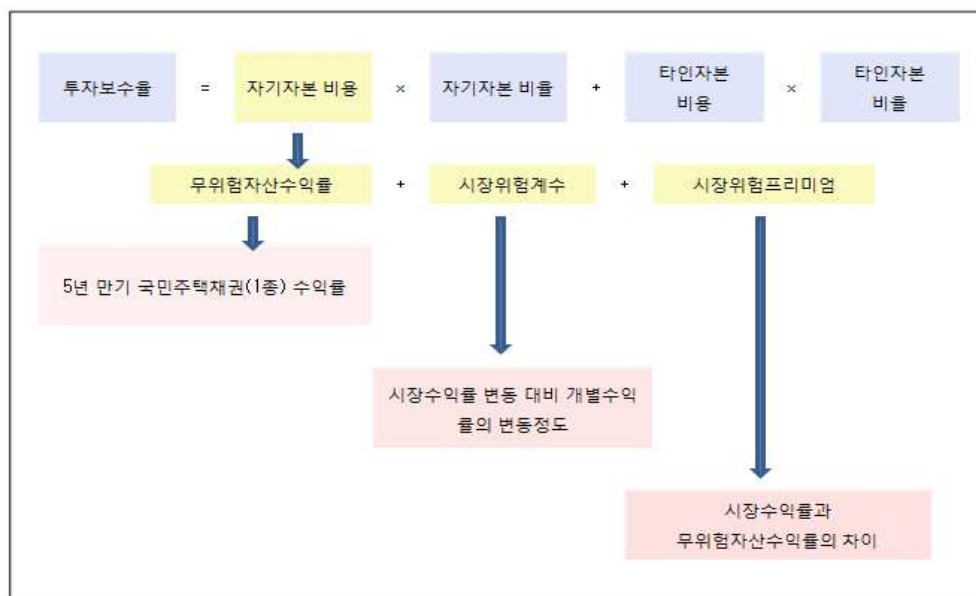
율로

- SK텔레콤 투자보수율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투자보수율로 구분하여 확정

2. 산정 방식: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o 투자보수율을 기업의 원천별 자본(자기자본, 타인자본)비용을 자본총액에서 원천별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자본구성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가중평균자본비용 방식으로 산정

< 그림 4-3 >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 o 자기자본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자기자본으로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의해 산정
- o 타인자본비용은 실제 기업이 조달한 부채의 이자율 2개년 평균

< 그림 4-4 > 자기자본비용 산정방식

$\text{자기자본비용} = \text{무위험자산수익률} + (\text{시장위험계수} \times \text{시장위험프리미엄})$ $\text{CAPM (K)} = \text{Rf} + \beta (\text{RP})$	
위험이 전혀 없는 자산에 투자할 때 얻는 수익률에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위험만큼을 추가로 보상한다는 의미	
무위험자산수익률 (Rf : Risk free rate)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1종)의 1년 평균수익률
시장위험계수 (β)	개별기업의 주가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의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
시장위험프리미엄 (RP : Risk Premium)	시장수익률과 무위험자산수익률 차이의 29년 (1980~2008년) 평균
시장수익률	거래소시장(KOSPI) 개별 주식의 동일가중 수익률

3. 과거 투자보수율 현황

- 유·무선 대표사업자(KT, SKT)의 투자보수율은 방통위가 정하고, 그 외 사업자는 대표사업자의 투자보수율을 준용하였음
- 방통위는 접속요율 결정을 위해 '96년도부터 주요 통신사업자(KT, SK 텔레콤) 투자보수율을 CAPM 방식으로 결정하여 왔으며, 이후 매2년 마다 산정
- KT의 투자보수율은 유선사업자에게, SKT의 투자보수율은 무선사업자 (KTF, LGT)에게 적용

< 표 4-2 >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연도별 투자보수율 (세후)

기준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2000	2002	2004	2006
KT	6.96	7.08	5.24	10	10	9.32	10.93	9.33	7.05	7.44
SK텔레콤	20.8	-	-	-	-	11.24	11.45	10.37	9.43	9.86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 요금, 접속료,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설비 제공대가 등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이므로 올해부터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의해 투자보수율 산정

4. 2010년 투자보수율

가. 2010년 투자보수율 개요

- 방통위는 올해 산정한 2008년 기준 투자보수율을 역무별 투자보수율로 확정하여 통보

< 표 4-3 > 2010년 투자보수율과 2009년 투자보수율 비교

구 분		전송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 무 (KT기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SKT기준)
2010년 (2008년기준)	세후 투자보수율	6.97%(0.47%P ↓)	7.62%(2.24%P ↓)
	세전 투자보수율	9.62%(0.64%P ↓)	10.51%(3.09%P ↓)
2009년 (2006년기준)	세후 투자보수율	7.44%	9.86%
	세전 투자보수율	10.26%	13.60%

※ 2009년(2006년 기준) 투자보수율은 방통위가 2009년 1월에 확정 한 투자 보수율임(KT와 SKT·KTF·LGT로 구분하였음)

- 2010년 투자보수율은 KT, SKT의 대표투자보수율을 산정하여 역무별 대표투자보수율로 확정
- KT 및 LG텔레콤 합병 등 통신사업자간 합병의 증가는 대표사업자의

투자보수율 적용을 어렵게 함

- 2008년 기준 투자보수율은 합병이전의 주가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유·무선 대표사업자(KT, SK텔레콤)의 투자보수율이 유·무선 역무를 대표함
- 하지만 이미 합병이 완료된 KT(2009년 6월 합병)와 LGT(2010년 1월 합병)의 경우 합병후 유·무선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므로 유선 또는 무선 대표투자보수율을 일괄적으로 한 회사에 적용할 수 없음
- o 결국 합병사업자의 역무별 투자보수율의 적용을 위해 KT의 2008년 기준 투자보수율은 전송역무 및 전기통신시설비임대역무의 투자보수율로 결정
- SKT의 2008년 기준 투자보수율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투자보수율로 결정

나. 2010 투자보수율 산정결과 분석

- o 금번 투자보수율 확정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SKTEL 기준)의 투자보수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이유는 SKTEL의 시장위험계수 하락에 기인

□ 시장위험계수의 개념

- o 시장위험계수(β)란 개별주식의 시장위험계수로서 개별주식이 시장주식평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 자기자본비용을 산정하는 CAPM모형의 핵심요소로서 개별회사주식이 시장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여부 혹은 개별회사의 수익률이 시장평균 대비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민감도임

CAPM-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R_i = R_f + \beta_i * [E(R_m) - R_f]$

- 투보울 산정에 사용되는 베타는 개별기업의 주식수익율과 시장수익율 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산출
- 예를 들어, 시장전체가 평균적으로 10%주가상승 했을 때, KT주가가 10%올랐다면 KT의 $\beta=1$, 즉 시장의 주가움직임과 같은 수준으로 KT주가 움직였음을 의미함. 따라서 개별주식이 시장전체의 움직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다면 $\beta > 1$, 덜 민감하다면 $\beta < 1$ 이 될 것임

□ 베타의 수준

- o 측정기간별 사업자별 시장위험계수 수준을 살펴보면 KT의 시장위험계수는 측정기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SKT, KTF, LGT는 낮아지고 있음

< 표 4-4 > 측정기간별 사업자별 시장위험계수 수준

시장위험계수 측정기간	KT유선	SKT	KTF	LGT
5년 ('04~'08)	0.39	0.35	0.44	0.66
4년 ('05~'08)	0.36	0.29	0.34	0.63
3년 ('06~'08)	0.36	0.27	0.31	0.58
2년 ('07~'08)	0.38	0.23	0.23	0.46
1년 ('08)	0.40	0.18	0.10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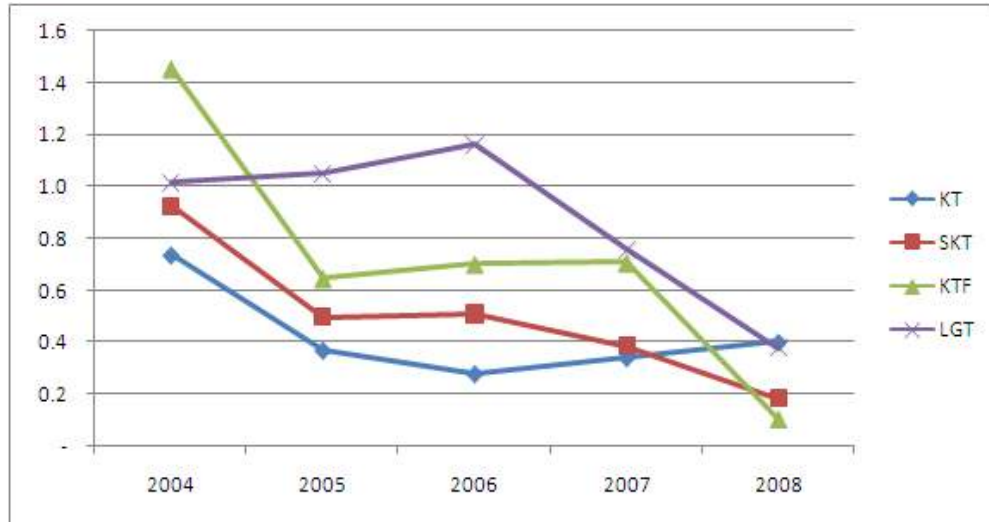
* 일별, 주별, 월별 시장위험계수 평균

- KT는 0.36~0.40수준에서 변동이 있으나, SKT는 최근으로 올수록 베타

가 낮아져 최근 1개년도만을 평균한 베타값이 0.18수준을 보임. 이는
과거 5개년평균치인 0.35에 비해 무려 48%나 감소한 것임

- 이러한 현상은 KTF, LGT도 마찬가지임
- o 유선사업자 KT의 시장위험도는 큰 변동이 없는 데 비해, 이동사업자
SKT, KTF, LGT의 시장위험도는 과거 베타값의 5개년 평균치에 비해
점차 그 수준이 감소하고 있음
- 2006년 투보율과 비교할 때, 2008년 유선과 이동사업자의 베타값 수준
의 전환은 각 서비스에 대해 시장에서 평가하는 위험도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특히 최근 서브프라임사태로 2008년 시장 수익율이 마이너스 수준
(-0.41)을 보여 과거대비 큰 폭의 변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사
업자의 시장위험계수가 낮아진 것은 그만큼 시장이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인식한 데에 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실제로 2008년 KT는 당시 유선전화의 대체서비스로 인식되었던 VoIP
서비스의 출시 및 Wibro, BCN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합병예상 등으로 인하여 위험수준이 하락할 이유가 없었음
- 하지만 SKT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동전화가입률
이 포화치에 근접하면서 성장기보다 훨씬 안정적인 서비스로 시장
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o 연도별 시장위험계수의 수준을 볼 때 KT는 2005년이후 시장위험계수
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이동사업자들의 시장위험계수는 2008년
도에 급격하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음

< 그림 4-5 > 연도별 시장위험계수(일별수익률 기준)



다. 역무별 투자보수율 확정 방식

□ 기존방식

- 유·무선 대표사업자(KT, SKT, KTF, LGT)의 투자보수율은 방통위가 정하고, 그 외 사업자는 대표사업자의 투자보수율을 준용
- KT의 투자보수율은 유선사업자(KT, SKB 등)의 모든 서비스에, SKT의 투자보수율은 이동통신사업자(SKI, KTF, LGT)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

□ 개선필요성

- KT 및 LG텔레콤 등 통신사업자간 합병은 대표사업자의 유무선 대표 투자보수율 적용을 어렵게 함
- 이미 합병이 완료된 KT(2009년 6월)와 LGT(2010년 1월)의 경우 합병 이후에는 유·무선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

- KT의 경우 2008년은 합병이전이므로 2008년 투자보수율은 기존방식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선사업자의 대표투자보수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SKT의 2008년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표투자보수율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유선 대표투자보수율인 KT의 2008년 투자보수율을 유무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2009년도 이후의 KT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 또한 LG텔레콤의 경우에도 합병이후에는 유무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므로 이동의 대표투자보수율인 2008년 SKT투자보수율을 2010년 이후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 역무별 투자보수율 산정 및 적용방안

- o 2008년 투자보수율은 통신사업자의 합병이전의 정보로 산출된 투자보수율이므로 KT, SKT의 2008년 투자보수율을 산정하여 역무별 대표투자보수율로 적용
- 2008년도 투자보수율은 합병이전의 주가자료 및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유·무선 대표사업자(KT, SK텔레콤)의 투자보수율이 유·무선 역무를 대표함
- 하지만 합병이 완료된 KT의 경우 2009회계연도 영업보고서에는 합병 후 유·무선통신서비스가 동시에 제시되므로 2008년 KT의 투자보수율을 유·무선 역무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합병사업자의 역무별 투자보수율의 적용을 위해 KT의 2008년 투자보수율은 전송역무를 포함한 기타 유선역무의 투자보수율로 SKT의 2008년 투자보수율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투자보수율로 결정

□ 세부 방안

○ SKT의 2008년 말 현재 제공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통신서비스(이동전화서비스, IMT-2000서비스), 와이브로서비스],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 KT의 2008년 말 현재 제공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통신서비스(셀룰러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선박무선통신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와이브로서비스, 기타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통신서비스,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 SKT는 이동통신서비스가 전체의 90%이상(2008년 영업보고서 기준 영업수익비율 99%, 총괄원가비율 93%)을 차지하므로 SKT를 이동통신서비스의 대표투자보수율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SKT가 와이브로서비스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지만 그 규모가 KT가 제공하는 규모에 비해 극히 작으므로 와이브로서비스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는 KT를 대표투자보수율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 4-5 > 2008년 KT와 SK텔레콤의 서비스 규모 비교(단위: 억원)

구분	와이브로서비스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영업수익	총괄원가	영업수익	총괄원가
KT	204	2,691	12,050	9,339
SKT	1	1,132	174	139
SKT/KT	0.5%	42.1%	1.4%	1.5%

- 와이브로 서비스의 경우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므로 SK 텔레콤의 투자보수율을 적용
- 신규서비스에 대한 투자촉진의 측면에서 높은 투자보수율 적용이 바람직

제 3 절 해외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1.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 o 해외 통신규제기관들은 투자보수율 산정시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자기자본비용은 CAPM방식을 적용하며, 타인자본비용은 부채프리미엄가산법, 자본구성비율은 목표자본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 o 실제 자본구성비율 적용시 부채프리미엄은 실제 부채프리미엄을 사용해야 하며 목표 자본구성비율을 이용하는 경우 유사한 수준의 자본구성비율을 나타내는 비교기업의 부채프리미엄을 사용하여 투자보수율을 산정해야 함
- Oxera(2007)에서는 투자보수율을 산정시 선택한 자본구성비율과 부채프리미엄 가정이 일치해야 함을 주장

< 표 4-6 > 해외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비교

구분	한국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투자 보수율	WACC	WACC	WACC	WACC	WACC	WACC	WACC	WACC
자기자본 비용	CAPM	CAPM	CAPM	CAPM	CAPM	CAPM	CAPM	CAPM
무위험 자산 수익율	5년만기 국민주택 채권 (1종) 수익률 :1년평균	5년만기 국채수익률	10년만기 국채수익률 6개월 평균	10년만기 국채수익률	10년만기 국채수익률 :1개월평균	*	10년만기 국채수익률	10년만기 국채수익률
시장위험 프리미엄	역사적 평균: (시장수익률 - 무위험 자산 수익률)로 추정	Benchmark 종합적 고려	Benchmark 종합적 고려	Benchmark 종합적 고려	Benchmark: 역사적평균, 전문가추정, 타기관 결정등 참고	*	Benchmark	Benchmark
시장위험 계수	시장수익률과 개별 주식수익률을 회귀분석 하여 추정	Benchmark 종합적 고려	Benchmark 종합적 고려	Benchmark 종합적 고려	Benchmark: 전문가추정, 타기관결 정 등 참고	5년간의 S&P 500 지수를 이용한 추정	목표 시장위험 계수 적용	*
타인자본 비용	조달원천별 가중평균 이자율법	부채 프리미엄 가산법	부채 프리미엄 가산법	부채 프리미엄 가산법	부채 프리미엄 가산법	부채 프리미엄 가산법	부채 프리미엄 가산법	부채 프리미엄 가산법
자본구성 비율	장부가액법	목표 자본구조	목표 자본구조	목표 자본구조	목표 자본구조	*	*	목표 자본구조

2. 투자보수율 수준

- 해외 주요국의 세전 투자보수율은 유선의 경우 8.5~10.21%, 이동의 경우 12.1~13.1%임

< 표 4-7 > 투자보수율 수준 비교

구분	평균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유선	세 후	-	7.29%	6.6%	8.92%	-	-	-
	세 전	9.58%	10.12%	9.2%	10.21%	7.95~10.13% (9.04%)	8.48~8.51% (8.50%)	9.8%
이동	세 후	-	7.44%	9.43%	-	-	-	-
	세 전	11.98%	10.33%	13.1%	-	10.68~13.52% (12.1%)	-	12.4%

3. 목표자본구조 : 타인자본비율

- 해외 규제기관은 시장가치에 근거한 자본구성비율을 기반으로 목표자본구조를 결정하고 있음
- 장부가치는 일반적으로 자본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에, 자본구성비율의 계산은 시장가치에 근거하여야 함(Copenhagen Economics(2007))
- 자본구성비율 결정방식은 실제 자본구성비율방식과 목표 자본구성비율 방식이 있으며, Copenhagen Economics는 목표 자본구성비율 방식을 사용
- 실제 자본구성비율은 장기적인 자본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증분원가 방법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기증분원가 방법론은 효율적 사업자의 원가에 기반하지만 규제대상 사업자의 실제 자본구성비율이 효율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타사업자들의 자본구성비율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목표자본구성비율로 사용하는 방식은 타사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최적 부채비율(기어링)을 가진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임

- o 2009년 5월 BT의 부채비율은 BT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66%(08년 3월 34%)까지 상승하였으나 Ofcom은 목표자본구조를 35%로 결정(Ofcom(2009))
- o TeliaSonera의 시장가치기반 실제 부채비율은 12%였으나 투자보수를 산정시 TeliaSonera의 목표자본구성비율을 30~50%로 가정하여 산출(Copenhagen Economics(2007))
- o eircom의 시장가치기반 실제 부채비율은 76%였으나 Oxxera는 투자보수를 산정시 eircom의 목표자본구성비율을 30~50%로 가정하여 산출 Oxxera(2007)
- o 해외주요국의 목표부채비율은 유선은 25~50%, 이동은 25~35%임

< 표 4-8 > 목표부채비율 수준 비교

구분	평균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유선	35.7%	35%	30~50% (40%)	30~50% (40%)	30%	30~35% (32.5%)	40%	25~40% (32.5%)
이동	30%	25~35%	25~35%	-	30%	-	-	-

4. 사례별 세부내용

가. 유선. 영국(BT)

- o Openreach가 제공중인 도매서비스의 요금산정체계를 결정하기 위해 유선부문 투보율 산정(Ofcom(2009))

< 표 4-9 > 영국 BT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구분		영국(BT, 2009.5)	
		산정방식	부채비율 35%
자기 자본 비용 (CAP M)	무위험자산 수익률	5년만기 국채 수익률	4.5%
	시장위험계수	종합적으로 고려 .회귀분석(BT그룹 시장위험계수) .비교 대상사업자 시장위험계수 추정치 .2005년 Ofcom 결정값	0.76
	시장위험 프리미엄	종합적으로 고려 .Dimson 추정치 .영국규제기관 과거 결정값	5%
	자기자본비용		8.3%
타인자본비용		부채프리미엄(BP) 가산법	7.5%(BP=3%)
자본구성비율 (부채비율)		목표자본구조(종합적 고려)	35%
세율		법인세율	28%
투자보수율		세후투자보수율	7.29%
		세전투자보수율	10.12%

나. 이동. 영국(Ofcom)

- 영국의 이동접속료 산정을 위한 단일의 효율적 이동사업자 투자보수율 산정(Ofcom(2010))

< 표 4-10 > 영국 이동접속료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구분		영국(이동사업자, 2010.4)	
		산정방식	산정값
자기 자본 비용 (CAPM)	무위험자 산수익률	5년만기 국채 수익률	4.5%
	시장위험 계수	종합적으로 고려 .Vodafone과 mmO2의 시장데이터에 기반하되 이동통신서비스만을 제공하는 Vodafone에 가중을 둠	0.7~1.0
	시장위험 프리미엄	종합적으로 고려 .Dimson 추정치 .영국규제기관 과거 결정값	5%
	자기자본비용		8.0~9.5%
타인자본비용		부채프리미엄(BP) 가산법 : 4개사업자의 부채프리미엄 고려	5.5~6.5% (BP=1~2%)
자본구성비율 (부채비율)		목표자본구조(종합적 고려) : 2006년이후 4개 이동사업자의 부채비율을 고려하되 Vodafone의 자본구조를 채택	25~35%
세율		법인세율	28%
투자보수율		세후투자보수율(명목)	6.59~8.30% (7.44%)
		세전투자보수율(명목)	9.15~11.52% (10.33%)

* Ofcom은 실질 세전투자보수율 7.6%를 적용(6.5~8.8%)

다. 유선. 스웨덴(TeliaSonera)

- 유선 접속료 산정을 위한 TeliaSonera의 유선부문 투보율 산정
(Copenhagen Economics(2007))

< 표 4-11 > 스웨덴 유선접속료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구분		스웨덴(TeliaSonera, 2007.10)		
		산정 방식	부채비율 30%	부채비율 50%
자기 자본 비용 (CAP M)	무위험자 산수익률	10년만기 국채 이자율(6개월 평균)	4.19%	
	시장위험 계수	FI접근법 등 종합적으로 고려 .유사사업자(12개) 회귀분석 .TeliaSonera 회귀분석 .유럽규제기관의 과거 결정 시장위험계수	0.8	1.05
	시장위험 프리미엄	종합적으로 고려 .Dimson/Damodaran 추정치 .재무분석가 설문조사 결과 .유럽규제기관 과거 결정값	4.75%	
	자기자본비용		7.98%	9.18%
타인자본비용		부채프리미엄(BP) 가산법(종합적 고려) .10년만기 회사채 스프레드 .미국 공익사업자 부채프리미엄 .유럽규제기관의 과거 결정값	4.99% (BP=0.8%)	5.49% (BP=1.3%)
자본구성비율 (부채비율)		목표자본구조(종합적 고려) .시장가치(TeliaSonera=12%) 기반 .유럽규제기관의 결정값 .유사사업자 부채비율	30%	50%
세율		한계법인세율	28%	
투자보수율		세후투자보수율	6.7%	6.5%
		세전투자보수율	9.3%	9.1%
			결정: 9.2%	

라. 이동. 스웨덴(TeliaSonera)

- 이동 접속료 산정을 위한 TeliaSonera의 이동부문 투보율 산정 (Copenhagen Economics(2008))

< 표 4-12 > 스웨덴 이동접속료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구분		스웨덴(TeliaSonera, 2007.10)		
		산정방식	부채비율 25%	부채비율 35%
자기 자본 비용 (CAPM)	무위험자산 수익률	10년만기 국채 6개월 평균이자율	4.20%	
	시장위험 계수	FI접근법 .유사사업자 회귀분석 .TeliaSonera 회귀분석 .유럽규제기관의 결정값	1.49	1.67
	시장위험 프리미엄	종합적으로 고려 .Dimson/Damodaran 추정치 .재무분석가 설문조사 결과 .유럽규제기관 결정값	4.75%	
	자기자본비용		11.27%	12.11%
타인자본비용		부채프리미엄(BP) 가산법 .10년만기 회사채 스프레드 .미국 공익사업자 부채프리미엄 .유럽규제기관의 결정값	5.2% (BP=1%)	6.2% (BP=2%)
자본구성비율(부채비율)		목표자본구조	25%	35%
세율		한계세율	28%	
투자보수율	세후투자보수율		9.39%	9.43%
	세전투자보수율		13.04%	13.1%
			결정: 13.1%	

마. 유선. 아일랜드(Ericom)

- o NGN을 포함한 Ericom의 유선사업을 위한 투보율 산정 (Comreg(2008))

< 표 4-13 > 아일랜드 유선사업을 위한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구분		아일랜드(Ericom, 2008.5)			
		산정 방식	부채비율 30%	부채비율 50%	Comreg 결정
자기 자본 비용 (CAPM)	무위험자산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4.5%	5%	4.75%
	시장위험 계수	Oxera 회귀분석 외부기관 회귀분석 비교사업자 회계분석 pure play method 이용 규제기관 과거 결정사항 Comreg 과거 결정사항	0.64	1.39	1.02
	시장위험 프리미엄	DIMSON추정치 규제기관 과거 결정값	4.8%	6%	6%
	자기자본비용		7.57%	13.36%	10.84%
타인자본비용		부채프리미엄 가산법 - 3년만기 회사채 스프레드	5.7% (BP=1.2%)	6.9% (BP=1.9%)	6.9% (BP=1.9%)
자본구성비율 (부채비율)		목표자본구조 - 규제기관 과거 결정값 - 비교대상사업자의 자본구 성비율	30%	50%	40%
세율			12.5%		
투자보수율		세후투자보수율	6.8%	10.13%	8.92%
		세전투자보수율	7.77%	11.08%	10.21%

제 4 절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1. 역무별 투자보수율 산정 방안

가. 시장위험계수(베타) 분리 방안

- 향후 투자보수율 재산정시에는 KT, LGT 및 SK그룹의 합병 등의 환경변화와 역무별 실질위험을 고려하여 베타분리에 의한 역무별 투자보수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베타분리에 의한 역무별 투자보수율 산정방안은 순수사업자접근(pure-play approach)방식, FIB(full-information industry beta)방식, 휴리스틱접근(Heuristic Approach)방식이 있음
- 순수사업자접근(pure-play approach)방식은 각 부문별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특화된 회사의 위험을 사용하는 방식
- FIB(full-information industry beta)방식은 기업가치가 개별서비스의 가치합계라는 논리에 근거하여 기업 전체의 베타값을 각 사업분야별로 분해하는 방식
- 이론적으로 각 부문의 가중치는 부문의 시장가치를 전체회사의 시장가치로 나누어 산출하나 특정 부문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 가중치를 사용할 수 없어 매출비율, EBITDA 등을 적용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주식수익률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값을 얻어야 하므로 합병후 일정기간이 필요

- 휴리스틱접근(Heuristic Approach)방식은 문제해결 방법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

나. 정책대안

- o SKT 합병전까지는 순수사업자접근(pure-play approach)방식을 이용하여
 - SKT의 투자보수율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KT의 투자보수율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의무”와 “기타의무(유선부분포함)”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SKT가 합병하기 전까지 SKT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수사업자(pure-play)에 해당하므로 SKT의 투자보수율을 KT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의무의 투자보수율로 적용한 후 KT의 기타의무(유선부분포함)의 투자보수율을 도출
- o SKT가 합병한 이후의 의무별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휴리스틱접근(Heuristic Approach)방식만이 적용 가능
- 순수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FIB(full-information industry beta)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자 주가정보와 재무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임

2.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 o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투자보수율의 산정이 필요

가. 시장가치 기준 자본구성비율 도입

- 자본구성비율은 투자보수율 산정시 기업의 원천별 자본(자기자본, 타인자본)비용을 가중평균하기 위해 사용
- 자본구성비율 산정방식으로는 장부가치 이용방법, 시장가치 이용방법, 목표자본구조, 최적자본구조 등이 있음
- 현행방식은 장부상의 자본구성을 기준으로 자본구성비율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자본조달시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
- 장부가치 기준 산정방식은 주식상장이 되지 않아 자본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구할 수 없을 때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나, 현재의 시장에서 평가된 객관적인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함
- 시장가치 방식은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잘 반영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적용가능
- 지금까지 투자보수율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장부가치방식을 유지하였으나, 현재의 시장에서 평가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
- ※ 접속료, 보편적서비스분담금, 설비제공대가 산정시 투자금액(또는 자산가액)은 이미 시장가치(또는 자산현행화)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 투자보수율은 미래의 효율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함
- 현 시점에서 시장가치 방식의 전환은 자기자본비율의 증가로 투자 보수율의 하락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음

< 표 4-14 > 장부가치 실제자본구조와 시장가치 실제자본구조 비교

구분	장부가치	시장가치
장점	- 주식상장이 되지 않아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구할 수 없을 때 적용가능 - 산정이 간편 - 안정적인 자본구성비율 도출	- 현재 시장에서 평가된 객관적인 기회비용을 반영 -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므로 투자자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적용가능 - 투자보수율이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개념이므로 투자보수율의 개념에 가장 적합한 방식임 - 접속료, 보편적서비스분담금, 설비제공대가 등 제반규제정책의 원가산정기준인 장기증분원가(현행원가 기반)방식에 의한 자산기저와 개념상 일치 - 자본비용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재무학계의 의견임 -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목표자본구조 결정시 시장가치기반의 실제자본구조를 고려
단점	- 과거 자본조달시 가치를 반영 - 현재 시장에서 평가된 객관적인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함 -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함 - 일반적으로 자본을 과소평가하므로 투자보수율을 과소측정함 - 기업의 경영전략과 회계정책에 의존적이며 회계원칙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 주식가격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내재가치)와 무관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경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과거에 투하한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함

- 시장가치 방식 도입이후 시장가치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규제의 안정성을 위해 목표자본구성비율 방식의 도입이 필요
- 목표자본구성비율 결정에 있어 규제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시장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투자보수율의 변동이 심화될 경우에는 안정성을 위해 목표 자본구성비율의 적용이 필요

< 표 4-15 > (시장가치) 실제 자본구조와 목표자본구조 비교

구분	(시장가치) 실제 자본구조	목표자본구조
장점	- 사업자별 경영환경을 고려한 실질 자본조달 결과를 반영 - 현재 시장에서 평가된 객관적인 기회비용을 반영 -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목표자본구조 결정시 시장가치기반의 실제자본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	- 시장가치의 급격한 변동시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여 안정성 확보 가능 - 해외규제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임 - 실제 자본구조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규제대상 기업이 자본구조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규제개입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타사업자들의 자본구성비율을 벤치마킹하여 목표자본구조로 사용하는 방식은 타사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최적자본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임
단점	- 사업자의 실제 자본구조가 효율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효율적 사업자의 원가에 기반하는 방식이 장기증분원가 방식임) - 장기증분원가 산정시의 장기적인 자본구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의성 배제가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우 벤치마크할 비교대상 통신사업자가 매우 적음

※ 해외규제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한 목표자본구성비율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사례: Ofcom의 BT 투자보수율 산정(2004년), BT의 부채비율은 2003년 3월에 40%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2003년 3월이후 최신의 주가정보에 의하면 35%수준이었음. 추가적으로 BT는 목표수준인 30%까지

낮추겠다는 의도를 공표. Ofcom은 최신의 주가정보에 의한 부채비율 35%(시장가치에 의한 실제자본구조)와 목표부채비율인 30%(목표자본구조)에 동일한 가중을 두어 산정

나. 부채프리미엄 가산법 도입

- 타인자본비용은 현재 이자부부채(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장기차입금)를 대상으로 실제 기업이 조달한 2개년 평균이자비용을 평균이자부부채액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음
- 실제 기업이 조달한 타인자본비용을 적용하는 현행방식은 사업자의 자금조달상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투자보수율로 반영하는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음
- 장부상 타인자본비용 산정방식은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타인자본비용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타인자본비용보다 높은 비합리적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
- 또한 실제 기업이 조달한 타인자본비용은 과거에 조달한 이자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및 미래시점의 타인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함
- 사업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현재시점의 기회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타인자본비용을 동일 신용도에 해당하는 현재시점의 회사채 발행이자율로 결정하는 부채프리미엄 가산법의 도입이 필요

제 5 절 소결론

- 2010년 투자보수율은 합병사업자의 역무별 투자보수율의 적용을 위해

KT의 2008년 기준 투자보수율을 전송역무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역무의 투자보수율로, SKT의 2008년 기준 투자보수율을 주파수를 할
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투자보수율로 확정하였음

- 주식시장에서는 유선사업자의 위험도를 이동사업자의 위험도보다 높
게 평가 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이동서비스의 투자보수율 수
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음
- 투자보수율은 통신사업자의 원가보상율, 상호접속원가, 보편적서비스
적자분담금 산정 등 통신경쟁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합
리적인 산정방식의 정립이 매우 중요
-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미래의 효율적인 투자를 유
인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투자보수율을 산정하기 위해 자본구성비율
또는 타인자본비용 산정방식 등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세부 방식뿐
만 아니라 역무별 투자보수율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제 5 장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회계규정 개선방안

제 5 장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회계규정 개선방안

제 1 절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현황 및 필요성

1. 회계분리의 의의 및 목적

가. 회계분리의 의의

- 회계분리란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역무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함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2조 제1호)
- 할당이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역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기능, 역무로 분류하는 것을 말함
- 배부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역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관련 기능, 역무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함
- 회계분리는 원가계산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며, 원가계산과정은 가능한 많은 직접원가를 규명하여 할당하고, 동질적인 간접원가들을 모아서 원가집합을 구성하고, 각 원가집합별로 인과관계에 따른 원가동인을 파악하여 배부기준을 결정한 후, 배부기준에 따라 원가대상으로 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이를 다시 직접원가와 합산하여 이루어짐

- 인과관계(causality)란 원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원가동인(cost drive) 간의 관계를 말하며, 원가동인이란 최종산출물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활동 또는 활동과 관련된 변수를 의미¹⁵⁾

나. 회계분리의 목적

- o 회계분리의 목적은 규제기관과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책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는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조행위 등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
- 대규모 투자와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을 갖는 통신산업은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므로 서비스별 원가배부는 사업자 내부의 원가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원가에 기반한 요금규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임

2. 음성·데이터 서비스 회계분리 현황

가. 통신위원회 심결

- o 통신위원회는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관련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이통5사에(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15) 이태희 등(2009.6), 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회계저널 제18권 제2호

록 음성/데이터 간 회계분리를 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이통사의 범위반대용 (제52차 통신위 심결내용, '99. 10)』

피신고인이 제공하는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에 필요한 원가 구성요소는 망연동장치(IWF) 뿐만아니라 교환, 전송, 선로설비등의 장비와 관련된 운영비용과 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판매 및 영업비용등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추가되는 장비인 망연동장치(IWF)와 관련된 원가만을 고려하여 이용요금을 산정하여 비용 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이용요금을 산정한 사실이 있다.

『시정명령사항 (제52차 통신위 심결내용, '99. 10)』

1. 피신고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피신고인의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규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피신고인의 내부회계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한다.

2. 피신고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기 시정명령 1호에 따라 개정된 내부회계규정을 근거로 무선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재산정하여 그 요금수준을 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이를 피신고인의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변경된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 신청할 것을 명한다.

-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데이터서비스가 이동전화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되며, 회계분리기준에도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의 회계분리하도록 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후에도 회계분리를 수행하지 않음

※ 이후 동일한 통신위원회의 심결사항 없음

- o 1999년 당시의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원 명칭은 정보통신부고시 제1996-47호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및표준양식'임)은 이동통신역무의 세부역무를 이동전화서비스(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동체에 설치하는 송·수신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무선폭출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기타 무선통신서비스(개인휴대통신서비스, CT-2서비스, 공항무선전화서비스, 선박무선통신서비스등 주파수를 할

당받아 수행하는 서비스)로 구분하였음

- 실질적으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로 이동통신역무의 세부역무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데이터 회계분리가 강제되지 않음
- o 2001년 3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의 개정이후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에서 이동통신서비스와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였으나 세부역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음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800MHz 또는 1.7 ~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마.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나.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의 이의 제기

- o '03년 11월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는 이통사의 무선데이터서비스가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한세텔레콤¹⁶⁾)의 역무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정통부는 이동통신서비스가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
- 정통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전용망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 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

16) '10.4월말 현재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는 에어미디어와 한세텔레콤임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의 역무침해 이의제기

(요구사항)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데이터서비스를 SMS(단문메시지서비스) 등 개인서비스(P2P)로 제한하고 △웹투웹(W2W, W2P) 등 기업용 서비스는 하지 못하도록 하며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들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P2P 서비스로 발생하는 이통사의 매출중 10%를 망 사용비용 형태로 면제해 줄 것을 요구

(결정) 이통사의 무선데이터통신이 역무침해가 아니라는 해석과 함께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와 이통사간 W2P SMS의 2년간 무정산하도록 유도(이후 1년 연장)

다.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리

-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간의 회계분리'는 이동전화서비스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통원가와 공통수익을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로 배부하여 분리하는 것을 의미
- 특히 2G 네트워크 원가에 대한 음성데이터서비스 분리 연구는 진행된 바 있지만 3G 네트워크 원가와 마케팅원가 및 수익의 분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정부는 2002년도 접속료 산정('02~'03년도 접속료 확정)시부터 데이터 서비스 원가분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구(전송설비 이용정도) 등을 감안하여 배부비율을 결정한 바 있음
- 이동전화서비스를 세부서비스별(IS95-A/B, CDMA2000-1X, EVDO)로 분리한 후 이중 IS95-A/B 원가는 모두 음성관련 원가로 간주하여 접속원가에 포함하였고
- EVDO 원가는 데이터관련 원가로 간주하여 접속원가에서 제외

- CDMA2000-1X원가와 WCDMA원가는 현재 음성:데이터= 9:1로 배부

3.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환경변화

가. 이통통신서비스의 성장과 기술 진화

- o 전 세계적으로 이동전화가입자수는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09년말 이동전화 가입자는 46억 7천 6백만명이고 보급률은 68.3%임
- '05년을 시점으로 가입자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연평균 약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09년의 가입자 증가율은 16%임

< 표 5-1 > 전세계 이동전화 가입자수

(단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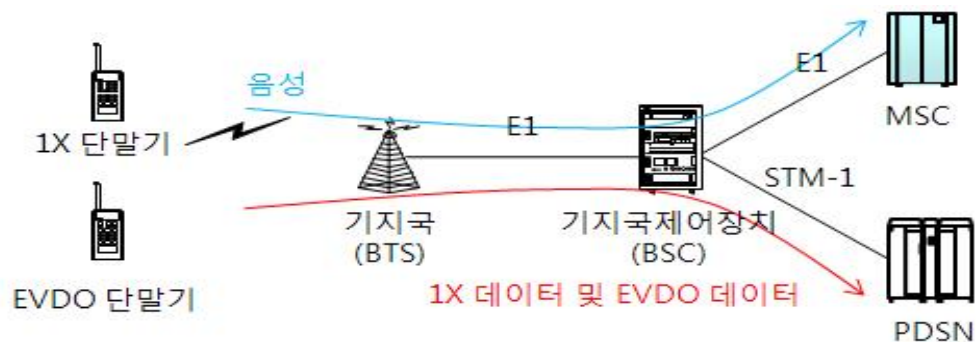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가입자수	1,417,660	1,763,979	2,219,136	2,757,424	3,359,733	4,039,632	4,676,174
증가율	-	24%	26%	24%	22%	20%	16%
100명당 보급율	22.3	27.3	34.0	41.7	50.2	59.6	68.3

※자료: ITU, ICT Statistics

- o 이동통신은 아날로그 이동통신에서 디지털 이동통신으로, 그리고 3세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으로 발전하면서 음성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o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구축한 이동망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IS-95A/B, CDMA2000-1X, EVDO, W-CDMA로 구분됨
-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는 망은 CDMA2000-1X 및 3G 네트워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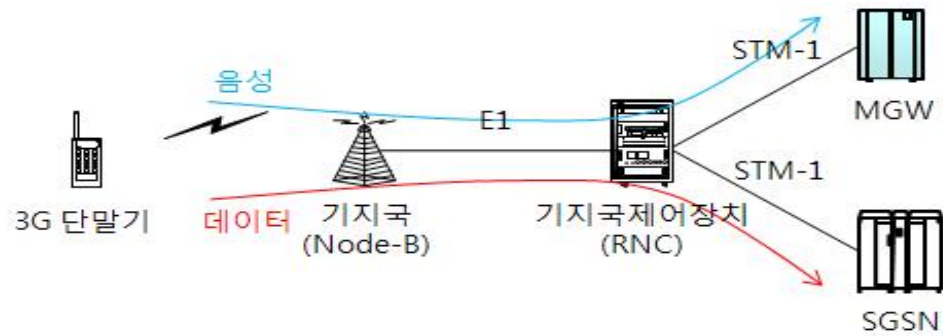
- o CDMA2000-1X는 기존의 IS-95B망에서 진화한 IS-95C망을 이용하여 기존 IS-95A/B망에서 지원했던 속도인 14.4Kbps나 56Kbps보다 빠른 최고 144Kbps로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서비스임. CDMA2000-1X부터는 이전에 IWF를 통해야만 가능했던 데이터망 접속을 BSC에서 바로 PDSN으로 연결하여 가능케 했음
- EVDO는 HDR(High Data Rate) 프로토콜을 근간으로 제정된 방식으로 데이터만 제공하는 방식임. KT와 SKT는 CDMA2000-1X 장비를 공유하고 채널카드만 1X EVDO카드로 교체하는 FA증설형으로 망을 구성하였으며, LGU+는 1X망과는 별도로 EVDO망을 구축하는 오버레이형으로 구성하였음

< 그림 5-1 > CDMA2000-1X/EVDO 망 구성도



- o 3G는 확장된 주파수 대역폭(5Mhz)을 기반으로 음성서비스, 고속 회선 데이터 서비스,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대용량의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응용한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까지 지원이 가능

< 그림 5-2 > 3G 망 구성도



나. 데이터서비스 트래픽의 급증

- o 이동사업자들의 데이터서비스 트래픽은 스마트폰의 증가로 인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o 전세계적으로 IDC나 Gartner의 예측에 따르면 전체 이동단말기 출하량 중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09년 약 15%정도에서 '13년에는 30%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표 5-2 > IDC의 스마트폰 전망

(단위: 1,000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통 단말 출하량	1,190,120	1,122,400	1,245,233	1,332,971	1,399,675	1,459,768
스마트폰 출하량	151,405	171,442	219,708	276,537	333,855	391,320
스마트폰 비중	12.72%	15.27%	17.64%	20.75%	23.85%	26.81%

※자료: IDC, "Worldwide Mobile Phone 2009 - 2013 Forecast Update", 2009년 12월
IDC, "Worldwide Converged Mobile Device 2009 - 2013 Forecast Update", 2009년 12월

< 표 5-3 > Gartner의 스마트폰 전망

(단위: 1,000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통 단말 출하량	1,222,252	1,214,019	1,322,371	1,431,222	1,533,195	1,635,749
스마트 폰 출하량	139,288	172,275	251,938	374,866	491,947	614,600
스마트 폰 비중	11.40%	14.19%	19.05%	26.19%	32.09%	37.57%

※ 자료: Gartner, "Forecast: Mobile Devices, Worldwide, 2003-2013 (4Q09 Update)", 2009년 12월

- o Cisco에 따르면 전세계의 모바일 데이터트래픽은 '14년까지 39배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표 5-4 > Cisco의 전세계 모바일 데이터트래픽 전망

(단위: EB/month)

구분	2009	2010(e)	2011(e)	2012(e)	2013(e)	2014(e)	평균성장 율
데이터 트래픽	0.09	0.2	0.6	1.2	2.2	3.6	108%

* 1EB(Exabyte): 1,000,000,000,000,000 bytes

* 자료: Cisco VNI Mobile, 2010.02.09

- o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제 데이터트래픽 증가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최근 2G에서 3G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며, 2G의 데이터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로 매우 작으며, 2G의 데이터통화량도 대부분이 EVDO에서 발생하고 있음(SKT의 경우 1X와 EVDO망의 전체 데이터량중에서 1X가 차지하는 비율이 0.34%)
 - LGU+의 경우 '08년이후 출시되는 단말기는 거의 100%가 Rev.A이므로 1X망에서의 데이터 트래픽은 대폭 감소하였음

※ Rev.A 단말기를 사용하는 LGU+의 가입자가 1X 및 Rev.A 커버리지 내에서 데이터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100% Rev.A 망에서 처리

다. 무선인터넷 시장규모

- o 이동통신 기술발전 및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주요 이동통신사의 데이터수익은 평균 30%이상 증가하고 있음

< 그림 5-3 > 주요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수익 증가율



자료: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Telco 대응방향(KT 하태숙, 2010 6월).

- o 이동사업자의 수익에서 무선인터넷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음성통화료 수익은 감소하고 있으나 무선인터넷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4.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 필요성

가. 개요

- 최근 데이터시장의 급격한 발전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음성서비스 원가는 요금원가 산정 및 접속료 산정에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규제정보가 되며, 규제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최근 무선데이터 매출액의 증가와 스마트폰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데이터트래픽의 급증 등 이동통신서비스가 음성서비스 중심에서 데이터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서비스 및 데이터서비스 회계분리가 필요
- 특히 암묵적 상호보조의 금지 및 도·소매요금 설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정보의 제공 측면에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는 매우 중요함
- 음성·데이터서비스에 대한 회계분리규정의 부재는 통신회계제도가 천명하는 상호보조의 금지를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서비스 원가왜곡으로 요금과 접속료 등을 통해 경쟁구조 및 사회적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¹⁷⁾

17) 박준호, 강병민(2007.6), 음성·데이터원가의 회계분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14권 제2호

- 물론 합리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수익배부가 어려우며, 수익 배부방식에 따라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의 원가보상율의 편차가 심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배부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려움
- 특히, 이동사업자의 수익 중 배부가 어려운 기본료, 가입비, 정액요금 등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정액요금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수익배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원가동인을 적용한 이동통신망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배부비율은 통화량 산출방식, 패킷의 시간 전환비율 결정, 설비 점유시간의 정의, 전환비율 산출 시 도입된 가정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통된 합의 도출이 어려움
- 이동전화의 경우 요금규제 사례가 거의 없어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어려움이 존재
- 미국과 영국은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소매규제는 없으며, 요금표 제출 의무(미국) 또는 약관공시 의무(영국)만 존재하고, 호주의 경우 이동전화요금 가격상한제가 2002년에 폐지되고 요금신고의무만 있음. 일본의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도소매 요금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준설정을 통해 산출된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의 회계정보는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임

나. 암묵적 상호보조의 금지

- 과거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촉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의 암묵적인 상호보조 용인

- 음성전화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고도화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짐
- o 또한, All-IP환경하에서는 음성도 패킷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의 의미가 쇠퇴할 수 있음
- 특히, 이동통신망의 경우 음성/데이터가 하나의 망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점차 All-IP화 되어가는 추세이므로 음성/데이터의 회계분리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o 그리고, NGN하 음성서비스와 PSTN망의 음성서비스 원가차이는 요금 차이를 유발하여 경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NGN환경하에서 음성은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 중 단지 하나의 서비스일 뿐이며, 매우 작은 대역폭을 사용하고, 매우 작은 직접비를 가질 것이므로 원가동인에 의한 배부의 경우 매우 작은 원가가 배부될 것이며 원가에 기반한 요금설정에 의하면 매우 낮은 수준의 요금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기술적 중립성의 고려여부 즉, NGN을 통해 제공되는 음성서비스와 전통적인 회선교환망(PSTN)에서 제공되는 음성서비스의 원가를 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원가동인에 의한 공통원가 배부 결과에 기반한 요금설정을 유지한다면 NGN하에서의 음성서비스와 PSTN망에서의 음성서비스의 요금차가 심할 것이고 이는 경쟁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NGN환경하에서는 음성에서 데이터서비스로 자연스럽게 대체될 수 있도록 데이터서비스가 음성서비스를 일정정도 보조하는 형태의 규제정책이 필요할 수 있음

- 특히 결합상품이 보편화되고 정액제 상품이 주요 요금제로 자리잡으면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로 구분하는 것이 규제정책에 필수적인 요소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임
- 하지만 상호보조의 금지는 통신회계제도의 기본전제에 해당하며 음성 데이터 회계분리는 암묵적 상호보조를 금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
- 음성데이터 회계분리는 요금뿐만 아니라 접속 등 다양한 규제이슈에 영향을 미침
- 기본적으로 이동망은 데이터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진화하고 있음
- WCDMA도 기존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필요한 초고속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함
-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의 상호보조는 서비스 원가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경쟁구조 및 사회적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도·소매요금 설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정보의 제공

- 접속료는 음성통화에 대한 도매가격만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원가에 대한 데이터서비스 원가의 분리가 필요
- 도매제공대가는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분리하여 산정하므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 원가의 분리는 도매제공대가 산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도매제공대가란 재판매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망을 빌릴때 지불하는 돈을 의미하며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분리하여 산정할 예

정입

- 도매제공대가는 소매요금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예정이지만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 정보의 제공은 합리적인 도매제공대가 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임
- o 현재 요금규제는 음성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서비스의 소매요금은 원가기반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데이터서비스의 트래픽양과 데이터서비스의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성중심의 요금규제가 데이터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데이터서비스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산출이 요구됨

라. 유무선 통신사업자 형평성 차원

- o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일반전화서비스와 인터넷서비스가 세부역무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는 별도의 세부역무가 없으므로 유선통신과 이동통신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음성전화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 회계분리가 필요
-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유선전화는 가입자선로부문의 음성전화와 ADSL 배부문제가 부각되었으며, 이동전화는 기지국설비부문의 음성전화와 무선데이터서비스(무선인터넷) 배부문제가 부각되고 있었음

제 2 절 음성·데이터 공통원가 배부기준 설정원칙

1. 회계분리의 절차와 회계분리 대상

가. 회계분리의 절차

- 재무회계제도에 의해 산출된 정보는 형태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정보를 형태별로 재분류(1단계_교환설비/전송설비/인건비/경비/감가상각비/설비사용료 등 32개)하고, 교환·전송·판매영업 등 사업 활동에 따른 기능별 분류(2단계_교환/전송/판매영업/일반관리 등 34개) 및 의무별 분류(3단계_시내/시외/이동전화/인터넷접속 등 28개) 단계로 수행
-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4조는 회계분리의 절차를 형태별 분류, 기능별 분류,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 등과 미사용중인 자산 등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 등의 의무별 회계분리의 순서로 규정

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음성·데이터서비스 구분 필요

- 현행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의무의 세부역무로 구성됨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의무에는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이동통신부가서비스, 와이브로 등의 세부역무로 구성됨

- o 원가대상이란 원가를 부여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부문, 제품, 활동 등을 의미함
- 회계분리에서 회계분리의 대상은 기능과 역무이며 최종적인 대상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세부역무)임
-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회계분리기준상 세부역무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음성통신서비스와 데이터통신서비스로 한 단계 더 세분화하여야 함

< 표 5-5 > 음성데이터 분리를 위한 세부역무 관련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부역무(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 종략 -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 서비스: 800MHz 또는 1.7 ~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부역무(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 종략 -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 서비스: 800MHz 또는 1.7 ~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다만, 음성통신서비스와 데이터통신서비스로 구분을 추가한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다만, 음성통신서비스와 데이터통신서비스로 구분을 추가한다.

2. 공통원가 배부 원칙

가. 직접원가와 공통원가의 분류

- o 원가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different cost for different purpose)할 수 있으며 원가행태에 따른 분류와 원가의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회계분리에서는 중요¹⁸⁾
- 원가행태에 따른 분류: 원가행태란 조업도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원가가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원가는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 고정원가(fixed cost)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원가이며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생산설비를 처분하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원가임. 고정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원가이기 때문에 단기에는 변하지 않음. 변동원가(variable cost)는 생산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동(반드시 비례적으로 변동할 필요는 없음)하는 원가임
-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원가 추적가능성에 따라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혹은 공통비)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 직접원가(direct cost)는 개별적인 제품 혹은 서비스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므로 다른 제품 혹은 서비스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로부터 배부할 필요가 없음. 공통원가(common cost)는 생산과정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동시에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원가임. 한 재화의 생산의 증가는 공통원가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으나 그 증가는 비례적일 필요는

18) <http://www.utilityregulation.com/essays/et1.htm>, “Costing Definition and Concepts”

없음.

- 경제학적인 원가분류: 경제학적인 원가분류는 한계원가와 증분원가로 분류할 수 있음. 한계원가는 매우 작은 생산량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경우 이에 따라 변하는 총원가의 증가분 혹은 감소분을 의미하며 평균원가와 달리 고정원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단지 변동원가의 영향을 받음. 증분원가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특정한 생산량을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경우 총원가의 증가분 혹은 감소분을 의미. 한계원가는 매우 작은 생산량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증분원가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재화 혹은 서비스의 매우 큰 생산량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

나. 인과관계에 따른 공통원가 배부

- o 일반적으로 서비스별 원가산정을 위한 역무별 회계분리에서는 원가를 추적가능성에 따라 직접원가와 공통원가로 구분한 후, 특정 서비스에 직접 이용하는 설비는 직접 할당하고 공통으로 이용하는 공통설비는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배부하게 되는데 공통원가를 배부하는 일반적인 배부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설정¹⁹⁾
- 인과관계(causality based) 기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배부 기준으로 하여 공통원가를 배부하는 방법. 자원을 소비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기준으로 공통비를 배부하므로 가장 합리적이며 이상적인 방안이 됨. 단, 실제 인과관계의 규명이 곤란하거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적용상의 어려움이 존재
- 수혜(received benefit based) 기준: 원가대상이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

19) 박준호, 강병민(2007.6), 음성·데이터원가의 회계분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14권 제2호 p61

또는 혜택에 따라 비례하여 배부하는 방식. 특히 결합원가 또는 공통 원가가 발생하여 범위의 경제가 있는 부분에 적용함이 적절함. 반면 수혜대상서비스 각각에 발생한 효익에 대한 측정이 수반되어야 함

- 부담능력(bearability based) 기준: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배부하는 방식.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통신서비스별 매출액 또는 이윤 등을 주로 의미함. 이는 신규사업부문 등에 대하여 원가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전략적인 목표와 연계하거나, 2개 이상의 서비스가 단일 네트워크에서 생산되지만 수명주기, 서비스별 규제정책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서비스별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 바람직함. 단, 합리적인 원가배부관점에서 보면 서비스간 상호보조가 발생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할 수 있음
- 공정성(fairness based) 기준: 공통비의 배부를 비용발생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배부하기 보다는 정책적인 판단, 공정한 성과평가 등 원가배부를 통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에 따라 배부하는 방식. 따라서 이 방식은 원가배부의 합리성과는 배치될 수 있음. 조직(개인)/부문단위의 성과평가에서 자주 고려됨.
- o 회계규정 제15조에서는 공통원가 및 공통수익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 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의 방지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계분리기준 제2조 제7호에서는 2이상의 기능 또는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공통원가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공통원가의 배부기준 설정시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배부기준의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의미

- 따라서 음성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에서도 인과관계에 의한 배부가 가장 바람직하며, 수혜기준·부담능력기준·공정성기준 등은 차선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공통원가의 세분류와 가격설정 원칙

가. 결합원가와 변동공통원가

- o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단일 시장에서 판매하는 기업은 직접원가만을 발생시키지만, 다종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여러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공통원가를 발생시킴
- 공통원가는 일반적으로 기업 전체의 생산량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한 제품 혹은 서비스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o 변동공통원가는 단일 제품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는 없지만, 단일 제품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어느 정도 증가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원가와 결합원가 사이에 있음
- o 결합원가는 일정한 분리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개개의 제품으로 식별되지 않고 분리점 이후에 개별제품으로 확인되는 연산품 생산시 분리점이전에 발생하는 공통원가를 말함
- 연산품 A의 판매량 혹은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려고 한다면 연산품 B의 판매량 혹은 생산량을 고정비율에 의하여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야 함
- 따라서 결합원가는 결합제품 개개의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제품 총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는 것임

나. 공통원가의 세분류와 가격설정 원칙

-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공통원가(variable common cost)는 직접원가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가격에 반영하여 회수 가능
 - 고정공통원가(fixed common cost) 및 결합원가는 한계원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한계비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쟁시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고정공통원가 및 결합원가는 여러 가지의 제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으로부터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제품으로부터 회수되어야 함
- 유선전화망에서 시내전화만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입자선로를 증설할 수는 없고, 가입자선로를 통하여 시내전화,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등이 제공되며, 가입자선로의 추가적인 설치에 시내전화뿐만 아니라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므로 가입자선로는 고정공통원가에 해당²⁰⁾

< 그림 5-4 > 유선전화망 구성도



20) <http://www.utilityregulation.com/essays/et1.htm>, "Costing Definition and Concepts"

- 고정공통원가는 상호의존성 때문에 경제학적인 가격설정 이론에서 문제를 야기시킴
- EPMU, Ramsey, ECPR, 이부요금제 등이 고정공통원가나 결합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음
 - EPMU: 증분원가에 비례하여 mark-up하는 방식
 - Ramsey: 수요의 역탄력성에 비례하여 고정공통원가를 배부
 - 효율적요소가격결정이론(ECPR): 기회비용까지 포함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
 - 이부요금제: 기본료를 통해 고정공통원가를 회수하는 방식

다. 공통원가 배부기준 설정의 원칙

- 변동공통원가는 원가를 유발한 원인을 통화량 등의 사용량으로 보아 사용량 기준 배부기준 설정이 바람직함
- 변동원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고려한 배부기준으로 사용량기준이 대표적이며 합리성을 가짐
- 고정공통원가는 상대적인 사용량 또는 인위적인 배분 방법에 의하여 회수되어서는 안 됨
- 현행 회계분리기준에서는 고정공통원가에 해당하는 가입자선로원가 배부시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회선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독립투자상대비율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 3 절 음성 · 데이터 회계분리 방안

1.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에 대한 사업자 의견

- KT는 이동망커버리지 원가에 해당하는 원가는 음성과 데이터에 50:50으로 배부하고, 변동원가는 회선수 비율에 의해 배부하되 전파사용료는 가입자수기준(청구건수 기준)으로 배부해야 함을 주장
- SK텔레콤은 물리적 점유시간에 전송속도를 반영한 패킷환산 음성과 데이터 통화량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하되, CDMA2000-1X는 1X/EVDO 데이터량 중 1X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량이 0.34%에 불과하므로 100% 음성원가로 간주해야 함을 주장
-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망의 주요설비를 그 운영목적으로 구분하면 대부분 트래픽 전송을 위한 장비이므로, 이들 장비간의 공통비는 인과관계 원칙에 의거하여, 실제 네트워크 점유시간에 따라 배부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 표 5-6 > 네트워크 원가의 음성데이터 분리 관련 사업자의견

구분	사업자 의견
KT	○ 고정원가(이동망 커버리지 원가): 음성과 데이터 5:5배부 ○ 변동원가: 회선수 비율 - 이동망의 경우 기지국제어장비(BSC/RNC)에서 분기되어 음성교환기(MSC)와 데이터교환기(PDSN, SGSN)로 연결되는 회선수 비율. 단, 전파사용료는 가입자수(청구건수)
SKT	○ 3G : 물리적 점유시간에 전송속도를 반영한 패킷환산 음성과 데이터 통화량 비율 ○ CDMA2000-1X : 1X/EVDO 데이터량중 1X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량은 0.34%에 불과하므로 100% 음성원가로 간주
LGu+	○ 통신설비 점유시간에 따라 배부

2. 3G망 세분화를 통한 네트워크 원가분리

가. 네트워크 원가분리 기본전제

- 사용량기준으로 배부가 가능한 변동공통원가와 순수통화량 증분원가에 대한 원가분리 방안을 제시

나. 현행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설비 세부분류

-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14조(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에 따르면 접속원가산정 대상사업자는 전기통신기능설비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의무가 있음
- 교환기능설비: 이동단국교환설비, 이동중계교환설비, 가입자위치인식장치(HLR), 데이터교환설비, 교환기능공통설비
- 전송기능설비: 기지국설비 및 제어장치, 이동중계전송설비, 전송기능공통설비
- 선로기능설비: 기지국중계선로설비, 이동중계선로설비, 선로기능공통설비

다. 3G망 구성 및 세부설비별 음성데이터 전용/공용 구분

-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전용 설비는 직접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로 할당하고,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 공용설비는 인과관계 및 원가행태를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설정
- 음성데이터 공용설비는 세분화가 가능한 최소단위로 구분한 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표 5-7 > 3G 망세분화 및 음성데이터 전용/공용 구분

기능	세부 분류	세부 설비	설명	공통 구분
교환기능설비	이동단국 교환설비	MSC Server/ MGW	ATM방식*의 회선교환 기능을 수행하는 대용량교환기	음성 전용
	데이터 교환설비	SGSN/ GGSN	ATM방식의 패킷교환 기능을 수행하는 대용량교환기. RNC 및 HLR과 연동하여 UE에게 패킷교환호 서비스를 제공	데이터 전용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	HLR	망에 등록된 모든 이동가입자의 파라미터와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DB	공용 (가입자수 원가동인)
	교환기능 공통설비	SCP	지능망(IN)서비스를 제어하는 기능수행. 지능망서비스가입자의 정보를 관리	공용
전송기능설비	기지국 설비 및 제어장치	Node-B	가입자단말기(UE)와 무선인터페이스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RNC와 정합하여 UE와 core망간의 송수신을 담당	공용
	기지국 설비 및 제어장치	RNC	access망의 제어시스템으로 WCDMA 무선가입자 호를 처리, 호흐름제어, 무선접속프로토콜 처리, 무선자원관리, 핸드오프제어, 전력제어 등의 기능수행	공용
	전송기능 공통설비	-	기지국-교환국간 전송 및 교환국간 등 core망간 전송을 위한 설비	공용
선로기능설비	기지국 중계선로 설비	-	Node-B와 RNC간의 선로설비	공용
	이동중계 선로설비	-	교환국간 등 core망간의 선로설비	공용
	선로기능 공통설비	-	기지국중계선로설비 및 이동중계선로설비를 위한 선로설비	공용

* ATM방식이란 각 메시지마다 주소를 지정한 오버헤드비트를 추가하여 한정된 링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말함

라. 세부설비별 음성데이터 분류방안

□ Node-B(기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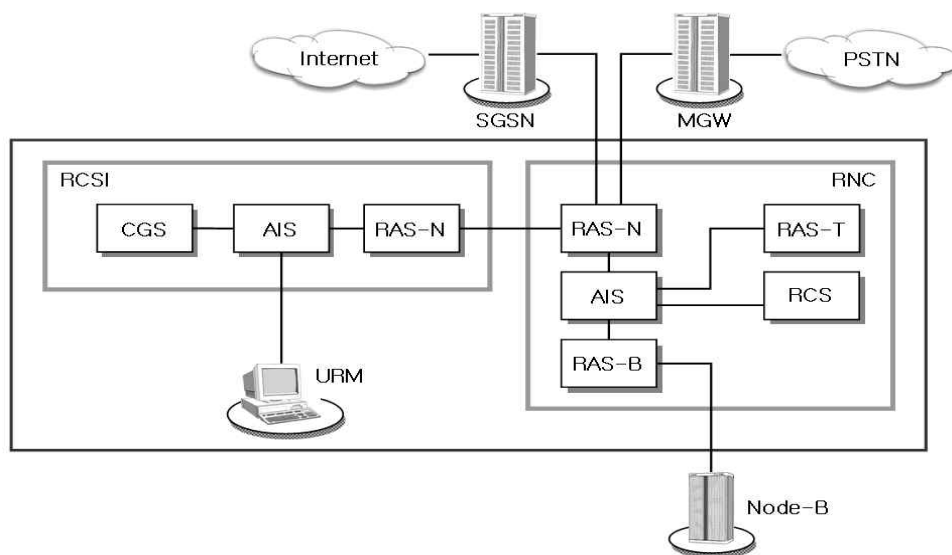
- o Node-B는 WCDMA의 기지국으로서 기지국제어기(RNC)의 제어하에 이동단말기(UE)로 호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
- WCDMA규격의 무선채널을 통해 UE와 인터페이스하는데 무선채널은 3GPP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WCDMA 방식의 다양한 무선이동통신 서비스(음성서비스 및 고속 데이터서비스, 멀티미디어서비스, 핸드오프, 전력제어 등)를 제공
- o Node-B는 1X의 BTS와 달리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가 하나의 카드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채널카드단위를 음성/데이터 분리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비교: BTS(1X)의 음성데이터 원가분리는 설비전체를 음성데이터의 공통설비로 보아 사용량기준으로 배부하되, CEB(channel element block)에 대하여는 채널카드비율로 음성/데이터를 분리한 후에 음성데이터 공통사용채널을 다시 통화량기준으로 배부(박준호·강병민(2007), P74)

□ RNC(기지국제어장치)

- o W-CDMA의 기지국제어장치(RNC) 내에는 RNC(Radio Network Controller)의 전체적인 운영 및 제어와 No.7 신호처리 및 사용자 호처리를 담당하는 RCS, ATM 교환기능 및 하드웨어 경보를 담당하는 AIS, 사용자 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RAS-T, RNC 및 핵심망과의 정합을 담당하는 RAS-N, Node-B와의 정합을 담당하는 RAS-B가 위치함

- 별도의 공통랙으로 RCSI가 있는데 이 랙은 RNC#0의 서브랙으로 1x GAN처럼 DCN과의 정합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RNC들 간의 통신과 클럭 분배기능을 담당. 1x BSM과 같은 운용 및 감시장비로는 URM이 있음

< 그림 5-5 > RNC의 세부 블록 및 시스템



약자	블록 및 시스템 이름
RCSI	RNC Common & Supplementary Interface
URM	UTRAN Manager
CGS	Clock Generation Subsystem
AIS	ATM Switch Interface Subsystem
RAS-N	RNC Access Subsystem - RNC & CN Interface
RAS-T	RNC Access Subsystem - user Traffic handling
RAS-B	RNC Access Subsystem - BTS interface
RCS	RNC Control Subsystem
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
MGW	Media Gateway

- PSTN과 DCN으로의 정합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통합이 되고, 기존의 BSC에 위치하던 보코더 블록도 MGW로 옮겨졌기 때문에 RNC

에서는 음성과 데이터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음

- ※ 비교: BSC(1X)의 세부 블록중에서 RPP는 데이터전용, TCB는 음성전용, 나머지 블록은 공용설비로 파악이 가능하여 각 서비스 하드웨어의 원가비율을 공통원가의 배부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전송 및 선로기능설비

- 기지국전송(선로)설비 및 이동교환국간전송(선로)설비가 직접구분이 가능하다면 직접 할당 후 서비스별 회계분리를 수행하고, 직접 할당이 어려운 경우 배부기준을 이용한 배부를 통해 회계분리 수행
- 일반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은 기지국전송(선로)설비와 이동교환국간 전송(선로)설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방안

- Node-B(기지국), RNC(기지국제어장치), 전송 및 선로기능설비 등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로 직접 분류되지 않는 공용설비는 세부설비요소로 구분하더라도 음성 및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이동망의 네트워크 구성요소를 최대한 세분화하여 가능한 최대로 직접 할당원칙을 유지하되 공통원가는 단일의 배부기준에 의해 배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제 4 절 현행 법체계하 회계분리 역무체계 검토

1. 회계분리 대상역무관련 법조항

가. 전기통신사업법(제10166호, 2010. 3. 22)

- o '10. 3. 22일 사업법 개정시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개별적 허가단위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받도록 개정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의 구분만이 존재하게 됨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 중략 -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 기존에 개별적 허가단위로 하였던 여러 가지 기간통신역무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완화하여 허가제를 개선함
-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

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기간통신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로 구분하였음
-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제10166호)의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시행령 제7조는 삭제되어 향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는 사라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

1. 전송역무: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회계규정)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6조(역무의 분류)에 따르면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통신역무로 구분하고 있으며, 역무의 세부분류는 별도로 고시토록 함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송역무 : 전신·전화·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4. 부가통신역무 :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회계분리기준)

- 회계분리기준 제3조 세부분류의 정의에서는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부분류(“서비스”라 함)를 규정하고 있음
- 기간통신역무를 3개 역무, 28개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음(전기통신역무는 부가통신역무 포함 4개역무, 28개서비스로 회계분리됨)

2. 현행 법체계하 회계분리 역무분류 체계 개정방향

-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인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가 삭제되었으므로 회계분리 대상역무에서도 사업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회계규정의 역무분류를 4개역무에서 2개역무(기간통신역무, 부가통신역무)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 회계분리 대상 역무체계는 허가 단위의 역무체계를 준용하는 것 보다

는 서비스별 수익 및 비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질의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가를 분류할 수 있는 공통역무의 존재가 필요하므로 현행의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제 5 절 All-IP환경에 대비한 회계분리대상 역무체계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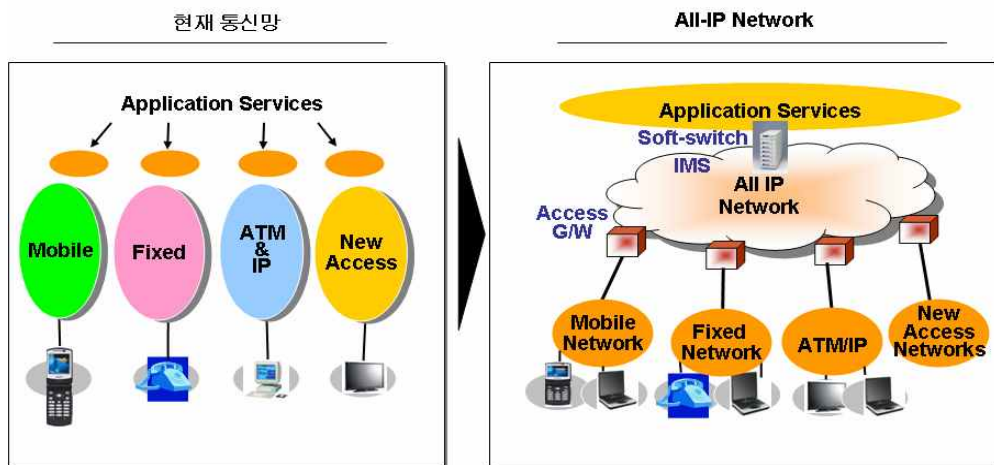
1. All-IP망의 개념

- All-IP 기반 네트워크란 "각각 독립된 망에서 구현되던 음성, 데이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합된 하나의 망"에서 구현 가능하도록 "IP를 기반"으로 한 융합망을 의미
- All-IP 기반하의 제공 서비스는 IP 기반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통합 및 융합, 고품질화/광대역화, 다기능적 특성을 보유
- 현재의 통신서비스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와 같이 개별 서비스에 따라 서로 물리적으로 구분된 통신망을 통해 제공
- 현재 유선과 무선 혹은 음성과 데이터 별로 각기 별도의 망이 구성되어 있어 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통신망을 구축 또는 임차해야 하므로 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 발생
- 그러나 All-IP 기반하에서는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통신망이 IP를 기반으로 통합, 통합된 단일망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그러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개념적으로는 All-IP망이 IP를 기반으

로 한 단일 통합망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망 관점에서는 가입자의 망 접속형태를 결정하는 가입자접속 구간은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되어 존재

- 그러나 이는 최종가입자가 통신망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속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독립된 서비스 망으로의 접속을 의미하지 않음

< 그림 5-6 > IP기반 네트워크 통합 개념도



- o 과도기적 All-IP망하에서는 통신사업자의 유무선 통합망이나 혹은 유선 망과 무선망과의 연동을 통해 끊임없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며
- 궁극적으로는 통합된 단말로(PDA, Smart Phone 등)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장 저렴한 접속형태(유선/무선) 혹은 접속가능한 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유무선망의 구분이 모호
- o 특히 2G/3G망의 경우 음성/데이터가 각기 별도의 망으로 구성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나

- 4G망의 경우에는 IP기반의 통합망 형태로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망에서 제공 → 전체 트래픽 중 음성이 차지하는 비중 감소
- 특히 4G망의 경우에는 가입자구간을 제외한 백본(즉 교-교구간)망은 별도의 구축없이 유선의 BcN백본망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백본망에서의 유무선망의 구분은 의미가 없을 수 있음

2. All-IP환경에 대비한 회계분리대상 역무체계의 검토

- o 회계분리란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역무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이며
- 회계분리의 목적은 규제기관과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따라서 정책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조행위 등에 대한 정보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계분리가 존재하는 것임
- o All-IP에 기반한 하나의 융합 네트워크에서 구현되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규제정책이 단일의 체계로 존재한다면 회계분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으나 개별 서비스별 원가 정보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한 All-IP하에서도 서비스별 회계분리는 필요
- 다만 지금의 28개 세부역무별 서비스 구분이 아닌 통합된 형태의 회계분리대상역무 체계가 필요할 것임

- All-IP에 기반한 회계분리대상 역무는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통합될 것이므로, 서비스 진화 양상을 주시하며 회계분리 대상 역무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제 6 장 결 론

제 6 장 결 론

-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과 통신회계기준의 정합성 검토를 통한 차이 조정방안 검토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규정 개정안을 도출
 - 덧붙여 규제목적에 적합한 투자보수율 산정방식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회계규정 개정안을 제시
- 재무제표 명칭 변경(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사항 및 개별회사 중심의 공시체계가 연결회사 중심의 공시체계로 변화한 사항에 대한 통신회계기준 보완 필요
 - 통신회계기준의 목적인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회계기준 규정 보완(역사적 원가 기준을 유지, 안정적 규제원가 산출을 위해 영업권 상각) 필요
 - 원칙중심의 K-IFRS 적용에 따라 기업이 세부 회계처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간 회계정보 산출결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신회계기준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자간 비교가능성을 제고
 - 회계처리방식에 따른 회계정보 산출결과 그 차이가 미미하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통신회계만을 위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규정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인정
 - IFRS를 적용하는 상장사의 경우 예측관련 사항 등에 기업의 재량권이 존재하여 신뢰성 및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해당 항목의 회계처리방법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 o 2010년 투자보수율은 합병사업자의 역무별 투자보수율의 적용을 위해 KT의 2008년 기준 투자보수율을 전송역무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역무의 투자보수율로, SKT의 2008년 기준 투자보수율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투자보수율로 확정
- 주식시장에서는 유선사업자의 위험도를 이동사업자의 위험도보다 높게 평가 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이동서비스의 투자보수율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음
- 투자보수율은 통신사업자의 원가보상율, 상호접속원가, 보편적서비스 적자분담금 산정 등 통신경쟁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산정방식의 정립이 매우 중요
-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미래의 효율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투자보수율을 산정하기 위해 자본구성비율 또는 타인자본비용 산정방식 등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세부방식의 개선이 필요
- o 최근 데이터시장의 급격한 발전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음성서비스 원가는 요금원가 산정 및 접속료 산정에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규제정보가 되며, 규제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음성·데이터서비스에 대한 회계분리규정의 부재는 통신회계제도가 천명하는 상호보조의 금지를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서비스 원가왜곡으로 요금과 접속료 등을 통해 경쟁구조 및 사회적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통사업자의 수익 중 배부가 어려운 기본료, 가입비, 정액요금 등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정액요금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수익배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준설정을 통해 산출된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의 회계정보는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임
- o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원가정보는 기업의 의사결정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
- 따라서 요금정보 및 각종 규제정책에 필요한 정보 산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함

참 고 문 헌

- [1] 금융위원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2009. 12. 31
- [2] 나상우·정훈(2009),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3] 이상우 외(2009), 융합화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9. 11.
- [4] 이용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현황, 우정정보 70(2007 가을), P1
- [5] 정훈·나상우(2007), 유럽 5개국의 투자보수율 산정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6] 한국회계기준원,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분석”. (2008. 11. 01)
- [7] 함창용·곽정호·나상우(2010), 투자보수율 및 원가보상을 규제, KISDI 이슈리포트 10-01
- [8] Comreg, Ericom's Cost of Capital, 2008. 5. 22
- [9] Copenhagen Economics, Cost of CAPITAL for Swedish Mobile Telecom Networks, 2008. 3. 26
- [10] Copenhagen Economics, WACC for the Fixed Tele communications Net in Sweden, 2007. 10. 26

- [11] Gartner, "Forecast: Mobile Devices, Worldwide, 2003-2013 (4Q09 Update)", 2009년 12월
- [12] IDC, "Worldwide Mobile Phone 2009 - 2013 Forecast Update", 2009년 12월
- [13] IDC, "Worldwide Converged Mobile Device 2009 - 2013 Forecast Update", 2009년 12월
- [14] ITU, ICT Statistics
- [15] NATPII, Reference Guideline on Accounting Separation, 2006. 12. 7
- [16] Newton, David, IFRS: Tax implications for the EU financial services industry-are you ready?, PriceWaterHouseCoopers, 2006.11.
- [17] Ofcom, A new pricing framework for Openreach: Annexes-Statement, 2009. 5. 22
- [18] Ofcom, Wholesale mobile voice call termination Market Review Volume 3 - Supporting annexes, 2010. 4. 1

부 록

< 부록 1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신·구조문 대조표

< 부록 2 > 신·구 기업회계기준간 차이비교표

< 부록1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산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1. “회계분리”라 함은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자산등”이라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역무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2.~7.(생략)	제2조(정의) 1. -----사업자가 개별 사업자의 ----- ----- ----- -----.
제7조(유형자산등의 취득)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한다. 1.~3.(생략) <신설>	제7조(유형자산등의 측정)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한다. 1.~3.(현행과 같음)
제8조(감가상각 방법) ①~③(생략) <신설>	②제1항 이후의 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의 측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다. 제8조(감가상각 방법) ①~③(현행과 같음)
제42조(보고서의 제출) ①~②(생략) ③사업자 중 단일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④~⑤(생략)	④무형자산(제7조제1항제3호의 영업권 포함)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보고서의 제출)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제47조(통계의 보고)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1. 재무상태표(-----) 2. ----- ④~⑤(현행과 같음) 제47조(통계의 보고) 1. 재무상태표(-----)

2.~5.(생략) 제48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u>대차대조표</u>(별지 제1호 서식) 2.~3.(생략) ③~④(생략) (별지 1호 서식) <u>대차대조표</u>	2.~5.(현행과 같음) 제48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현행과 같음) ② ----- ----- ----- ----- 一. 1. <u>재무상태표</u>(-----) 2.~3.(생략) ③~④(생략) (별지 1호 서식) <u>재무상태표</u>
---	--

< 부록 2 > 신·구 기업회계기준간 차이비교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vs 현행 기업회계기준 vs 일반기업회계기준 -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장 목적, 구성 및 적용
기준의 구성	주제별로 별도의 기준으로 구성	주제별로 별도의 기준으로 구성	하나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이익잉여금처분계 산서의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로서 작성해야 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
적용대상	규정 없음	기준서 제24호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여신전문금융업, 종합금융업 등)를 대상으로 규정함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인 상호저축은행업과 여신전문금융업만을 대상으로 규정함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특수목적기업의 정의 명시화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제공함	규정 없음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회계연도 중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익반영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취득일부터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함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각 항목별로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종속기업 매수일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순이익(손실)을 일괄하여 차감(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함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각 항목별로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함
공시규정의 완화	연결재무제표상 부문별보고 및 주당이익의 공시를 요구함	연결재무제표상 부문별보고 및 주당이익의 공시를 요구함	<삭제>
종속기업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의 일치 여부	회계정책의 방법만 일치 요구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방법에 대한 일치 요구	회계정책의 방법만 일치를 요구함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회계처리	회계추정의 변경. 전진적용	회계정책의 변경. 소급적용	회계추정의 변경. 전진적용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제1016호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규정 없음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회계정책을 최초 적용시 회계처리			'유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절 공통사항
금융상품의 최초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함(문단 43)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문단 17)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함 (문단 6.12)
금융자산의 양도규정	위험과 보상, 통제, 지속적관여의 순차적 적용(문단 15~37)	위험과 보상 모형이 내재된 통제모형 (기준서 8호 '유가증권' 문단 48~55 해석 52-14 '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 참조)	위험과 보상모형과 통제모형의 순차적 적용(문단 6.5~6.11)
당기손익인식지정 항목	①회계불일치, ②자산부채를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보고하는 경우, ③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경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문단 9와 11A)	규정 없음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문단 6.14)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절 공통사항
대손충당금 규정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문단 63)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문단 6.17)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현행 해석 [53-7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3절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후 주계약의 회계처리를 명시함 -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 검토시점을 명시함(원칙: 최초 인식시점) -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시 공정가치측정방법을 명시함	규정 없음	-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후 주계약의 회계처리를 명시함 -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 검토시점을 명시함(원칙: 최초 인식시점) -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시 공정가치측정방법을 명시함
해외사업장순투자 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회사의 지분 해당금액에 대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함	규정 없음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회사의 지분 해당금액에 대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함
위험회피대상항목 의 확대	연결재무제표에서 전부 제거되지 않는 외환손익에 노출되어 있다면,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규정 없음	연결재무제표에서 전부 제거되지 않는 외환손익에 노출되어 있다면,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있음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의 중단시 회계처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간동안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규정 없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간동안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중단 사유의 하나로 함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를 중단 사유의 하나로 함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중단 사유의 하나로 함
위험회피수단의 제한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음	규정 없음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음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표준원가 허용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 사용 허용	규정 없음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 사용 허용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지분법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산정시 합산 대상	종속기업만 포함	지배기업, 종속기업 모두 포함	종속기업만 포함
회계추정의 방법 일치를 요구하지 아니함	요구하지 않음	규정 없음	지분법피투자기업의 회계추정방법과 투자기업의 회계추정의 방법을 일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함
공시요구사항	K-IFRS 제1028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보다 적은 공시를 요구함	규정 없음	공시요구사항 완화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보험차익의 회계처리	손상차손(손상, 소실, 포기된 유형자산)과 보험금수익을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보아 총액으로 표시	해당규정 없음 (실무관행상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서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	손상차손(손상, 소실, 포기된 유형자산)과 보험금수익을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보아 총액으로 표시
감가상각방법 변경 시 회계처리	회계추정의 변경 (전진법)	회계정책의 변경 (소급법)	회계추정의 변경 (전진법)
감가상각개시시점 의 명확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	규정 없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 채택 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 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규정 없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 채택 시 :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규정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음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0호 ‘투자부동산’을 적용	규정 없음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분류는 제외)에 대하여 제10장 ‘유형자산’을 적용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손상 기준서에 따라 손상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 측정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에 대해 최소한 매년 회수가능가액을 추정	[삭제]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지분통합법의 폐지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취득법만을 인정하고 지분통합법은 폐지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분통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취득법만을 인정하고 지분통합법은 폐지함
염가매수차익의 즉시 당기손익 인식	염가매수차익 발생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함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일에 손익으로 인식함	염가매수차익 발생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함

과거부의영업권의 처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제12장이 최초 적용되는 기초에 부의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동금액을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에서 조정함
취득관련원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직접관련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함	취득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함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직접관련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함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취득원가 측정원칙 변경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취득일 전에 피취득자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직전 취득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동 지분의 장부금액과 취득일에 지급된 이전대가의 공정가치의 합계액으로 함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우발부채의 인식	당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의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함.	규정 없음	당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의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함.
조건부대가의 인식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함	조건부대가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함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함
측정기간	취득일로부터 1년	취득일이 속한 회계연도 말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말 까지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측정기간을 단축함

		사업결합회계처리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충당부채에 적용할인율에 대한 규정	재무보고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재무보고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한다고 규정함.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당초 할인율 또는 매 보고기간말의 할인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함. 이러한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함.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72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부의 자본잉여금 회계처리	규정 없음	제72조(자본조정의 처리) 자본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현행 상법상으로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자본조정(부의 자본잉여금)의 처리가 상법상 주주총회 고유의 권한으로 보여지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강제 처분 규정을 두지 않되, 미처분된 자본조정이 있는 경우 향후 동일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는 규정을 둠(문단 3, 9, 10, 11 및 17)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2. 배당건설이자는 개업후 연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환산	규정 없음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전환청구 만료시까지 비화폐성부채로 회계처리함. 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화폐성부채로 회계처리(기준서 9호 문단 15)	규정 없음
전환사채 조기상환이나 재매입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통하여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규정 없음	전환사채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의 경우, 지급하는 대가를 발행시점에 발행금액을 부채와 자본에 배분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배분하여 인식함(문단 23)

	거래원가를 거래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문단 28~32에 따라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문단 AG33)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보조의 공시	현행 기업회계기준해석[61-7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관련 공시사항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기초·기말 누계액과 기중 변동액에 대한 공시 규정 없음	(타)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기초·기말 누계액과 기중 변동액	<삭제>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비가득조건 회계처리	비가득조건의 충족여부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가득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규정 없음	비가득조건의 충족여부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가득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음
비가득조건 미충족에 대한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을 충족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규정 없음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을 충족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	가득기간에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 이를 취소로 회계처리함		가득기간에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 이를 취소로 회계처리함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재고자산, 제5호 유형자산, 제19호 리스, 기업회계기준 제55조 5항~7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 규정 추가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 규정,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규정 및 공동자산에 대한 손상검사 규정이 존재	규정 없음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 규정,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규정 및 공동자산에 대한 손상검사 규정을 추가함. 다만 유형자산만으로 이루어진 현금창출단위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5호와 같이 현금창출단위의 미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함.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종업원급여	현행 기업회계기준 적용의견서05-2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미래 예상퇴직연금에 대한 할인율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우량회사채에 대한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함	국공채 시장수익률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우량회사채에 대한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사용함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현행 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외화거래 최초인식 단계에서의 적용 환율	환율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평균환율을 허용	평균환율 불허	환율 변동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평균환율을 허용
해당 국가의 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허용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 시에 적용하는 평균환율 산출방법	평균환율의 산출방법을 특정하지 않음	일평균, 월평균 및 가중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 있음	평균환율의 산출방법을 특정하지 않음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의 회계처리 규정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개인의 지배력에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개인의 지배력에 대한 판단은 제4장

대한 정의			‘연결재무제표’의 지배력의 정의 및 규정을 참고하도록 실무지침에서 규정함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3호 주당이익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주당이익
주당이익에 관한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3호 ‘주당이익’에서 규정함	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에서 규정함	추가 의견 수렴하여 2010년에 제정 예정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
농림어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제1041호 ‘농림어업’에서 규정함	규정 없음	현행 실무와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
추출활동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규정함	규정 없음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s)을 준용하여 작성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
최초공시사건일로 부터 1년내 처분요건	매각예정분류시점으로부터 1년 내 처분요건에 대한 예외규정 있음	규정 없음	최초공시사건일로부터 1년 내 처분요건에 대한 예외규정 추가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현행 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일반기업회계기준 의 최초채택	과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기업이	규정 없음	과거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는 경우에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는 경우에 적용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주당이익	규정 없음	주당이익 공시 생략	<삭제>
사업부문별 공시	규정 없음	사업부문별 공시 생략	<삭제>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각 기준서별로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규정함	각 기준서별로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규정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전체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규정함

1.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